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고동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54호)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64호)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70호)
- 장동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09호)
-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10호)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14호)
- 박상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36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551호)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86호)
- 임이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29호)
- 김대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749호)
- 박홍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28호)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36호)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43호)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893호)
- 이성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54호)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41호)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32호)
- 김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468호)
- 김위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567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6
III. 검토의견	25
1.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 배경	25
2.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	26
3. 개정안 조문별 검토의견	31
가. 산불취약지역(산불발생우려지역)의 지정 등의 근거 마련	31
나. 국립공원 발생 산불 관련 재난방지 주체 변경	43
다. 산불 예방·진화 절차에 소방청장과의 협의 절차 추가	49
라. 산불위험지수 관련 산불위험 경보 제도 신설	54
마. 산불예방계획 및 산불 관련 시책	60
바. 산불진화인력 관련	64
1) 경비 지원 관련	64
2) 안전사고방지대책 및 작업중지 조치	68

3) 사상자에 대한 보상	71
사. 산림항공기 관련	74
1) 산림항공기 운영 계획 수립·시행	74
2) 산림항공기·장치·부품의 기령 및 내구연한	78
3) 산림항공기 구매·임차 비용 지원	85
아. 포상의 대상 변경 및 포상금의 지급 범위 규정	88
자. 산불 관련 벌칙 규정 강화	92
1) 산불 가해자에 대한 형량 상향	92
2) 산불 예방을 위한 과태료 상향	100
3) 산불 원인제공자에 대한 복구비용 및 진화비용의 청구 근거 마련 ..	107

I . 제안경위

1. 고동진의원안(2209454)

가. 제 안 자 : 고동진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3. 28.

다. 회 부 일 : 2025. 3. 31.

2. 서천호의원안(2209464)

가. 제 안 자 : 서천호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3. 28.

다. 회 부 일 : 2025. 3. 31.

3. 서천호의원안(2209470)

가. 제 안 자 : 서천호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3. 31.

다. 회 부 일 : 2025. 4. 1.

4. 장동혁의원안(2209509)

가. 제 안 자 : 장동혁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1.

다. 회 부 일 : 2025. 4. 2.

5. 박상웅의원안(2209510)

가. 제 안 자 : 박상웅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4. 1.

다. 회 부 일 : 2025. 4. 2.

6. 김성원의원안(2209514)

가.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1.

다. 회 부 일 : 2025. 4. 2.

7. 박상웅의원안(2209536)

가. 제 안 자 : 박상웅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5. 4. 2.

다. 회 부 일 : 2025. 4. 3.

8. 윤준병의원안(2209551)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6인

나. 제 안 일 : 2025. 4. 2.

다. 회 부 일 : 2025. 4. 3.

9. 박덕흠의원안(2209686)

가.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9.

다. 회 부 일 : 2025. 4. 10.

10. 임이자의원안(2209729)

가. 제 안 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10.

다. 회 부 일 : 2025. 4. 11.

11. 김대식의원안(2209749)

가. 제 안 자 : 김대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11.

다. 회 부 일 : 2025. 4. 14.

12. 박홍배의원안(2209828)

가. 제 안 자 : 박홍배의원 등 14인

나. 제 안 일 : 2025. 4. 15.

다. 회 부 일 : 2025. 4. 16.

13. 김선교의원안(2209836)

가.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15.

다. 회 부 일 : 2025. 4. 16.

14. 김예지의의원안(2209843)

가. 제 안 자 : 김예지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15.

다. 회 부 일 : 2025. 4. 16.

15. 박덕흠의원안(2209893)

가.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16.

다. 회 부 일 : 2025. 4. 17.

16. 이성권의의원안(2210054)

가. 제 안 자 : 이성권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23.

다. 회 부 일 : 2025. 4. 24.

17. 박덕흠의원안(2210241)

가. 제 안 자 : 박덕흠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30.

다. 회 부 일 : 2025. 5. 1.

18. 윤준병의원안(2210432)

가.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5. 9.

다. 회 부 일 : 2025. 5. 12.

19. 김소희의원안(2210468)

가. 제 안 자 : 김소희의원 등 19인

나. 제 안 일 : 2025. 5. 12.

다. 회 부 일 : 2025. 5. 13.

20. 김위상의의원안(2210567)

가. 제 안 자 : 김위상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5. 21.

다. 회 부 일 : 2025. 5.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고동진의원안(2209454)

지난 3월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30년 운항)가 추락해 기장 1명이 숨진 가운데,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경우 기령(機齡)이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70%(33대), 30년이 넘은 헬기가 25%(12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불 헬기의 구매가 아닌 임차의 비용마저도 부족하여, 각 지역의 대형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국가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 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산림항공기의 기령, 안전관리 및 부품 교체·정비 등 지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5조의2 신설).

2. 서천호의원안(2209464)

현행법은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항공기 정비인력은 항공기 1대당 1.9명(2019~2023.6월 기준)으로 유사하게 자체 항공기를 보유·운영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5.5명, 소방청 4명, 경찰청 3.3명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난은 그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산림항공기의 항시 운항과 이를 위한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전문 정비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항공기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함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산림항공기의 적절한 정비를 통해 산림재난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제2항 신설).

3. 서천호의원안(2209470)

현행법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방본부장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등에게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불 발생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데, 산불 발생 횟수는 2012년 197건에서 2021년 349건으로

1.8배 증가하였고, 피해면적은 2012년 72ha에서 2021년 766ha로 10.6배 확대되었으며, 산불발생에 따른 피해금액은 2012년 25억 4,100만원에서 2021년 361억 2,500만원으로 14.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서 7년 이상의 징역,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칙을 강화하고, 관찰 소방본부장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등은 3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산불예방을 통하여 산림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1항, 4항 및 제79조제3항 등).

4. 장동혁의원안(2209509)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에 통합적·효율적 대응을 위한 법적 체계의 구축을 목적으로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복원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법」에서 분법하여 2025년 1월 31일 제정되었으며,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한편,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음.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의 대부분은 기간제 계약직 신분으로, 임금도 최저시급 수준이고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처우

수준이 열악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문제제기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음.

현재 시행예정인 법률에는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 및 산사태 대응업
무 종사자에 대하여 수당 지급 등의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
지 않는바,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 및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의 실질
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이 있음.

이에 산불진화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등
산불 대응업무 종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등 지원할 수 있
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안 제37조제3항),

산사태대응팀 및 산사태현장예방단 등 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에게
도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5. 박상웅의원안(2209510)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제작하여 산림
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배포하도록 하
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며,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
로 하여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불 진화 지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등에 소방청 소속 전문인력의 지식 및 협조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전문인력은 산불의 특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초기 대응을 할 수 있고 산세와 바람의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한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산불 진화인력에 대하여 진화에 필요한 명령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소방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인력을 활용한 효과적인 산불 예방과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5조제1항 등).

6. 김성원의원안(2209514)

최근 경상북도 의성, 안동, 청송, 영양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현장에서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진화단원들의 사망 사례가 발생함.

이들은 국가를 대신하여 산림재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상황에서의 작업중지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며, 체계적인 안전사고 방지대책 역시 부재한 실정임.

이에 산불진화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를 법제화함으로써, 산불예방진화대원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37조의2, 제37조의3 신설).

7. 박상웅의원안(2209536)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산불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발생하면 시·도지사가 통합지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발생한 산불은 시·군·구의 경계를 넘는 거대한 산불로 확대됨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불 진화 인력들이 시·도의 통합지휘 등으로 다른 지역의 산불 진화를 지원하게 되고 진화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례가 발생함.

그런데 다른 지역의 산불 진화를 지원하러 갔다가 발생한 사망과 부상에 대해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통합지휘한 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지사의 통합지휘에 따라 시·군·구 소속 인력이 관할 외 지역에서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은 통합지휘한 시·도지사가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 보상금 지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67조제2항 신설).

8. 윤준병의원안(2209551)

현행법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산림 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 산림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운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관할 소방서장 등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등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의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4항 및 제79조제3항·제4항).

9. 박덕흠의원안(2209686)

최근 산불을 진화하던 산림항공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가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항공기는 44년된 노후 기종으로 확인됐고, 앞서 2022년 강원도 양양 산불 당시 추락한 산림항공기는 1975년 제작돼 생산한 지 47년 된 노후 기종으로 파악됐음.

현재 산림청이 보유 중인 산림항공기는 모두 50대로,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는 약 65%(33대)에 이르고, 이 가운데 기령이 30년 이상 된 항공기는 12대 정도 된 것으로 확인돼 노후화 비중이 높음.

특히 산림항공기는 산불 진화 시 발생하는 연무, 담수를 위한 수상 비행 등 부식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산림항공기 특성에 맞는 운영연한 및 부품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산림항공기와 부품에 대한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한 산림항공기 또는 부품은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산림항공기 도입이 지연 및 중단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한정적인 경우에만 운영연한을 초과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5조).

10. 임의자의원안(2209729)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21개의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산불 진화에 전문적 기술을 갖춘 특수진화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연중 발생하고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립공원 특성에 맞는 전문 산불 진화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진화교육

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산불 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0조 및 제37조 제2항).

11. 김대식의원안(2209749)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계획의 수립,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산불진화단 설치 등 산불의 예방·진화와 산불 조사 및 피해지 복구 등을 규정하여 산불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조한 기후와 국가적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울창한 산림이 조성된 결과로 인하여 과거보다 잦은 산불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번 봄 발생한 산불처럼 한번 발생한 산불은 대형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물적·인적 피해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어 산불 예방조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임.

또한 산불 발생과 그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산불 발생 감시 및 예측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 마련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봄철에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시기별 풍향 등을 조사하고, 이를 수립된 산불방지대책과

수종, 임목밀도, 과거 산불 발생 위치·시기·피해면적 등과 연계하여 산불 발생 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는 방법으로 산불에 대비하는 방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이 산불 발생에 대한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개발 및 보급, 민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산불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시기별 풍향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불취약지역을 정의·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불취약지역이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지정한 지역으로 정의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9호의2 신설).

나.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불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기초조사에 따라 산불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7조의2 신설).

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 취약지역 알림 표지의 설치, 입산통제, 임도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7조의3 신설).

12. 박홍배의원안(2209828)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으로 정의하고 효율적인 산림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활동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산림재난방지구관기관으로 정하고 있음.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현행 「산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산불유관기관이자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공원관리청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난 예방 등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소관 구역의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불재난방지기관이자 동시에 공원관리청인 도립·군립공원과는 달리 국립공원 구역의 경우 산림재난관리에 대해 해당 지역에 관한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리체계가 제각각인 실정이며, 실제 국립공원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립공원공단의 경우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림재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재난방지 업무

에 관한 권한 및 범위가 제한적이고 법률에 따른 산림재난 대응 전문 조직 등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공원관리청으로 하여금 직접 국립공원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한하여 예방·대비·대응 및 피해 복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산림재난을 방지하고 산림생태계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13. 김선교의원안(2209836)

현행법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막대한 상황인데, 대부분 산불의 원인은 불법 소각이나 성묘객의 실수와 같은 실화로 밝혀짐에 따라 정부가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까지 방화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산불 발

생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4조의2 신설 등).

14. 김예지의원안(2209843)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등의 산불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큰 피해를 입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사례에서 보듯이 건조한 시기의 산불은 그 규모가 대형화되어 사망자와 부상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주택, 농업시설, 공공시설 등을 광범위하게 파괴하므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7조의2 신설 등).

15. 박덕흠의원안(2209893)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봄철 산불 피해액은 1조 원이 훨씬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성묘객 실화, 쓰레기 소각 등 인위적 실화가 산불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최근 5년 간 발생한 2,600건의 산불 가운데서도 입산자 실화로 발생한 산불이 822건(31.6%), 논·밭두렁 소각 195건(7.5%), 쓰레기 소각 252건(9.7%), 담뱃불 실화 254건(9.8%), 성묘객 실화 68건(2.6%) 등 대부분 개인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이처럼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산불 발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지만, 현행법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지적이 많아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에 대한 벌칙을 7년 이상 15년 이하로 하고,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2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며,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하고, 이와 같은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해당 형(形)의 2분의 1까지 가중죄를 적용하고자 함.

또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 산림,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사람 등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사람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및 제79조, 제80조 신설).

16. 이성권의원안(2210054)

현행법은 산불 예방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은 방화든 실화이든 발생하게 되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자기 소유 산림이 아닌 타인 소유 산림이나 건물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실화에 대해서는 의도가 없다는 이유로 처벌 규정이 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산림인근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교육 실시 등을 포함하는 산불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현행 과태료 규정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과실로 타인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자기 소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산불 예방으로 산림인근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 제7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신설, 제79조).

17. 박덕흠의원안(2210241)

최근 이상기후가 심화됨에 따라 대형 산불 사고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최근 5년 간 피해액이 1조 8,35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남.

특히 산불은 피해면적과 화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산불이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신고나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이 적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 발생 신고나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1천 만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산불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도 추가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96조).

18. 윤준병의원안(2210432)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나, 산림재난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인력과 장비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흡한 실정임. 특히, 산불진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같은 고위험 업

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근거가 부재하고 노후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령 및 내구연한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위험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림항공기 등의 기령 및 내구연한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여 운영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산림항공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산불 등의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생태계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7조제3항 및 제55조의2 신설).

19. 김소희의원안(2210468)

최근 발생한 경북 초대형 산불과 같이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의 대형화 및 상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강수량 감소 및 건조화가 심한 지역 등 산불 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불 발생 가능성, 산불로 인한 피해 가능성 및 예상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대피소 마련과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방·진화시설의 설치 등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76조의2 신설).

20. 김위상의원안(2210567)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함)를 계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고온 건조한 기상 조건과 강풍 등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여 산불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산불위험 정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예방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가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산불위험지수 위험 단계별 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불위험지수를 5단계로 규정하고 산불위험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논두렁·밭두렁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예방체계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산불위험지수를 매일 계산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제1항).

나. 산불위험지수는 ‘극심’,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의 등급을

정하도록 하고, ‘극심’ 또는 ‘매우 높음’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 해당 주민에게 산불위험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산불위험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논두렁
· 밭두렁 또는 생활 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의2제3항 신설).

라. 산불위험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산림재난방지법의 제정 배경

「산림재난방지법」(법률 제20751호)은 산림재난(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응관리체제를 통합하고 단일 법체계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산림보호법」에서 산불, 산사태 및 산림병해충에 관한 내용을 분리·이관하고,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및 지침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산림재난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산림재난 관리 정책의 종합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5년 1월 31일 제정되어 2026년 2월 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음.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산림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인근 산림 및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피해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대규모 손실이 초래될 수 있고, 최근 기상이변과 지속적인 산림개발로 산림재난이 확대되고 있으나,¹⁾

재난에 관한 기본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림분야의

1) 2023년 말 기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피해)에 따른 피해규모는 각각 4,992ha, 459ha, 107만 그루로, 최근 10년 평균 대비 1.2배, 1.8배 및 1.1배 증가

【산림재난 발생 현황】

산불 피해면적		산사태 피해면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10년평균	'23년	10년평균	'23년	10년평균	'23년
4,004ha	4,992ha	258ha	459ha	96만그루	107만그루

「산림보호법」으로는 복잡 다기화되는 산림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²⁾

2.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취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전인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의성군·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상남도 산청군·하동군·김해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이하 ‘2025년도 대형산불’)로 인하여 역대 1위³⁾ 규모의 산림피해(103,876ha)와 183명의 인명피해, 1조 818억원의 재산피해 등이 발생하였음.

【 ‘25. 3. 21. ~ 3. 30. 기간 산불 발생 현황 】

구분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	경북 안동	경북 영덕	경북 영양	경북 청송	울산 울주·온양	울산 울주·언양
산불발생	3.21(금) 15:28	3.22(토) 11:25	3.22(토) 11:25	3.22(토) 11:25	3.22(토) 11:25	3.22(토) 11:25	3.22(토) 12:12	3.25(화) 11:55
주불진화	3.30.(일) 13:00	3.28.(금) 17:00	3.28.(금) 17:00	3.28.(금) 17:00	3.28.(금) 17:00	3.28.(금) 17:00	3.27.(목) 20:40	3.26.(수) 08:10
산불대응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3단계	2단계
산불영향구역	1,858ha	12,821ha	9,896ha	8,050ha	5,070ha	9,320ha	931ha	63ha
산림피해면적	3,397ha	28,853ha	26,709ha	16,208ha	6,864ha	20,655ha	1,117ha	73ha

※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5.3.21.~30.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계획」, 2025. 5.

2) 「산림보호법」은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 외에도 산림보호 및 보호구역 지정·관리, 보호수 지정·관리, 입산통제 구역 등 산림보호와 관련된 사항, 나무의사, 나무병원 등 수목진료제도 등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산림재난의 예방·대응사항을 충분히 담아내기에 미흡한 상황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과 골격을 제시하고 있을 뿐 산림재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3) 1986년 산불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를 기준으로 함

【 2025년도 대형산불 주요 특징 】

❖ 산불 피해규모(1987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 산불 규모 역대 1위: 총 103,876ha → (역대 2위) '00년 동해안 산불 23,794ha
- 단일 사군 산불 면적 역대 최대 의성 28,853ha → (중전) '22년 동해안 산불 올진 14,140ha
- 피해액/복구비 역대 최대 1조 818/1조 8,809억원 → (중전) '22년 동해안 산불 2,261/4,170억원

❖ 재난사태 선포 : 산불 4번째

- 1차) '05년 양양 산불, 2차) '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 3차) '19년 강원 산불, 4차) '22년 동해안 산불

❖ 특별재난지역 선포 : 산불 6번째

- 1차) '00년 산불, 2차) '05년 양양 산불, 3차) '19년 강원 산불,
- 4차) '22년 동해안 산불, 5차) '23년 4월 산불

'19년 / '22년 / '25년 산불피해규모 비교



※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5.3.21.~30.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계획」, 2025. 5.

【 피해 현황 】

※ 특별재난지역 선포 8개 시·군 대상

❖ 인명피해

- 183명(사망 27, 부상 156) ※ 공무원 1, 진화대원 3 미포함

❖ 재산피해

- 1조 818억원(사유시설 5,175, 공공시설 5,643)
 - (사유시설) 주택 3,848동, 농·수산물시설 6,106건, 농·산림작물 3,419ha 등
 - (공공시설) 산림 약 104천ha, 국가유산 등 공공시설 769건

※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5.3.21.~30.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계획」, 2025. 5.

이에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산림재난방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총 20건('25.5.22. 기준)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개정안은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개선하고, 산불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장비 관련 지원을 확충하며, 산림재난 관련 벌칙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각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개정안(20건)의 주요 내용 】

의안번호	대표발의	주요 내용
2209454	고동진 의원	- 국가가 산림청장·지자체의 산림항공기의 구매·임차 관련 비용 지원
2209464	서천호 의원	- 산림항공기 운영 계획(정비 전문인력, 시설·장비 확보) 수립·시행
2209470	서천호 의원	- 벌칙 강화(타인 소유 산림 방화 5년→7년, 실화자 3년→5년) - 과태료 강화(불 피운 자·화기 등 소지자 30만원→70만원)
2209509	장동혁 의원	- 산불진화단·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사태대응팀·산사태현장예방단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
2209510	박상웅 의원	-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배포받는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 소방청장을 포함함을 명시 - 산불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통합지휘본부에서의 산불 진화 지휘·명령, 산불진화단의 업무 관련 소방청장과 협의 의무 규정
2209514	김성원 의원	- 산불진화단·산불예방진화대·산불재난특수진화대 관련 안전 사고방지대책 수립 및 산불예방진화대의 작업중지 조치 규정
2209536	박상웅 의원	- 통합지휘 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에 대한 보상은 통합지휘한 시·도지사가 지급하도록 함

의안번호	대표발의	주요 내용
2209551	윤준병 의원	- 실화자 벌칙 강화(3년/3천만원→5년/5천만원) - 과태료 강화(담배 관련 70만원→100만원) - 과태료 강화(불 피운 자·인화물질 등 소지자 30만원→50만원)
2209686	박덕흠 의원	- 산림항공기·부품의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초과 시 운영·사용 제한(운영연한 연장·초과운영 요건 규정)
2209729	임이자 의원	- 산불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권한(산림재난방지기관장) 및 산불 예방진화대·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운영 권한(산림재난방지기관장)을 「국립공원공단법」 상 공원사무소의 장에게 부여
2209749	김대식 의원	-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 발생에 대한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 - 산불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개정안 제17조의2)를 토대로 산 불취약지역 지정·고시
2209828	박홍배 의원	-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지자체, 지방산림청 외에 「자연공원법」 상 공원관리청도 추가
2209836	김선교 의원	- 산불 발생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 비용 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
2209843	김예지 의원	- 산불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현행법 제17조)를 토대로 산불 발생우려지역 지정(변경)·고시 - 실화자 벌칙 강화(3년/3천만원→5년/5천만원)
2209893	박덕흠 의원	- 벌칙 강화(타인 소유 산림 방화 5년→7년, 자기 소유 산림 방화 1년→2년, 실화 3년/3천만원→5년/5천만원) - 과태료 강화(소형열기구 날린 자 200만원→300만원) - 과태료 강화(담배 관련 70만원→100만원) - 과태료 강화(불 피운 자 30만원→50만원) - 가중죄 규정[타인(자기) 소유 산림 방화 등으로 사망 시 1.5배로 형 강화]

의안번호	대표발의	주요 내용
2210054	이성권 의원	- 산림재난방지기관장에게 산불예방계획 수립·시행(주민 교육, 행위 제한 홍보 등) 의무 부여 - 벌칙 강화(타인 소유 산림 실화 3년/3천만원→3년) - 과태료 강화(담배 관련 70만원→100만원) - 과태료 강화(불 피운 자 30만원→50만원)
2210241	박덕흠 의원	- 포상금 지급 대상에 “산불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를 포함 - 포상금 지급 범위 명시
2210432	윤준병 의원	- 산불진화단·산불예방진화대·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보수, 위험 근무수당 및 기타수당 지급 근거 마련 - 산림항공기·장치·부품의 기령 및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초과시 운영·사용 제한(감항증명 유효기간까지는 운영·사용) - 예산 확보 의무와 기령 및 내구연한 공개 규정
2210468	김소희 의원	- 산불취약지역 지정·고시 및 관련 의무와 행위 제한 등 규정
2210567	김위상 의원	- 매일 산불위험지수를 국민에게 알리고, 산불위험지수에 따라 산불위험 경보 발령 및 조치 의무 규정 - 산불위험지수가 높은(극심·매우 높음) 지역에서의 중대 과실 실화자에 대한 벌칙과 조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3. 개정안 조문별 검토의견

가. 산불취약지역(산불발생우려지역)의 지정 등의 근거 마련

개정안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취약지역(또는 산불발생우려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김대식의원안 제2조·제17조의2·제17조의3, 김예지의원안 제2조·제17조의2, 김소희의원안 제2조·제17조의2·제17조의3·제76조의2).

현 행	김대식의원안 (제2209749호)	김예지의원안 (제2209843호)	김소희의원안 (제2210468호)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 음과 같다. 1. ~ 9. (생략) <신설>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정의) ----- -----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산불취약 지역”이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제17조의3에 따 라 지정하여 고 시한 지역을 말 한다.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정의) ----- -----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산불발생 우려지역”이란 산불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 는 지역으로 제 17조의2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정의) ----- -----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산불취약 지역”이란 산불 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으로 제17조의2 에 따라 지정하 여 고시한 지역

현 행	김대식의원안 (제2209749호)	김예지의원안 (제2209843호)	김소희의원안 (제2210468호)
10. ~ 14. (생략) <u><신 설></u>	10. ~ 14. (현행과 같음) <u>제17조의2(산불 발생 우려지역 조사) ①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자료 등을 바탕으로 한 산불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시기별 풍향 등의 기초조사를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드론(「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을 말한다) 등의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u> 10. ~ 14. (현행과 같음)	<u>을 말한다.</u> 10. ~ 14. (현행과 같음)

현 행	김대식의원안 (제2209749호)	김예지의원안 (제2209843호)	김소희의원안 (제2210468호)
<신 설>	② 산림재난방지 기관의 장은 제1 항에 따른 기초 조사 결과에 따 라 산불 발생 우 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 항에 따른 조사 의 내용·방법이 나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한다.		
	제17조의3(산불취약 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산림재 난방지기관의 장 은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 소화하고 산림자 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7조의 2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취약 지역을 지정 및	제17조의2(산불발생 우려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산림 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제17 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 발 생 위험성이 높 다고 인정되는	제17조의2(산불취약 지역 지정) ① 산 림재난방지기관 의 장은 산불 발 생 가능성, 산불 로 인한 피해 가 능성 및 예상 피 해 정도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산불취 약지역을 지정· 고시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

현 행	김대식의원안 (제2209749호)	김예지의원안 (제2209843호)	김소희의원안 (제2210468호)
	해제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지정된 산불취약지역에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음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입산통제, 임도의 정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한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이를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의 소유자에	지역을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불발생우려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사유 2. 지정예정지의 소재와 면적 3.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산불발생우려지역의 지정과 관	기관의 장은 산불취약지역에서의 산불 발생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피소를 지정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취약지역에서의 산불 발생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실시하고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방·진화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현 행	김대식의원안 (제2209749호)	김예지의원안 (제2209843호)	김소희의원안 (제2210468호)
	게 알려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 기관의 장은 산 불 발생 시 지역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곳에 대피 소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표지판을 설치하 여야 한다. ⑥ 산림재난방지 기관의 장은 대 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 지점검을 실시하 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산불 취약지역의 지정 · 해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농림 축산식품부령으 로 정한다.	련하여 해당 토 지의 소유자·점 유자 또는 관리 인은 제2항제3호 에 따른 이의신 청기간에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산림재난방지 기관의 장은 제3 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날 부터 20일 이내 에 그 이의신청 에 대하여 결정 을 하고 지체 없 이 그 결과를 신 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 기관의 장은 제3 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 가 없다고 인정 하면 산불발생우 려지역으로 지정	있다.

현 행	김대식의원안 (제2209749호)	김예지의원안 (제2209843호)	김소희의원안 (제2210468호)
		· 고시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지방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⑥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지의 이용 등으로 산불발생우려지역으로 지정한 범위를 변경하여 확대하거나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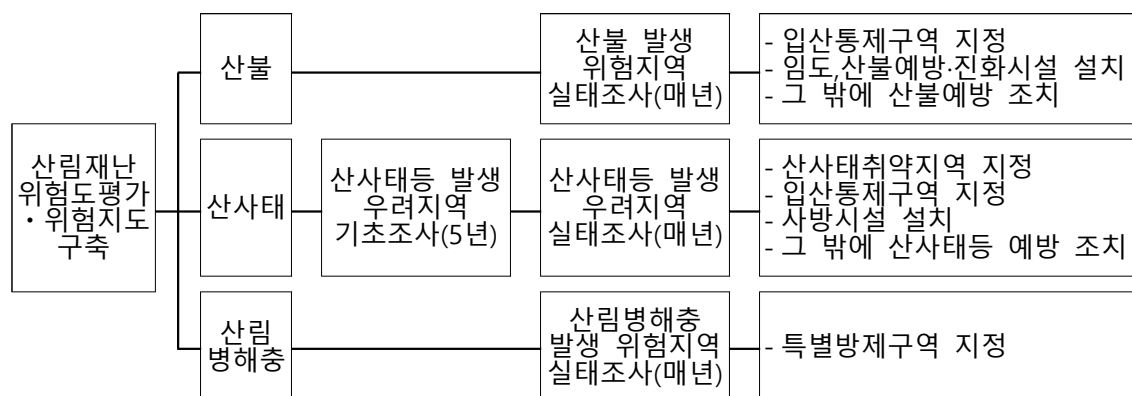
현 행	김대식의원안 (제2209749호)	김예지의원안 (제2209843호)	김소희의원안 (제2210468호)
		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⑦ 산불발생우려지역의 지정·변경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⑧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제6항에 따라 지정·변경된 산불발생우려지역이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⑨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제5항·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산불발생우려지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공유림·사유림의 경우에 한정한다) 산림청	

현 행	김대식의원안 (제2209749호)	김예지의원안 (제2209843호)	김소희의원안 (제2210468호)
<신 설> <신 설>		장애에 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⑩ 그 밖에 산불 발생우려지역 지 정예정지 공고, 산불발생우려지 역의 지정·고시 ·변경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한 다.	제17조의3(산불취약 지역에서 행위 제한) 누구든지 산불취약지역에 서 제17조의2에 따른 대피소, 산 불 진화를 위한 임도 및 산불예 방·진화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2(벌칙) 제 17조의3을 위반 하여 산불취약지 역에서 대피소, 산불 진화를 위

현 행	김대식의원안 (제2209749호)	김예지의원안 (제2209843호)	김소희의원안 (제2210468호)
			한 임도 및 산불 예 방 · 진 화 시 설 을 훼손한 사람 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2 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2 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2 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이하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청
장으로 하여금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재난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산
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림재난별
조사 등을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림재난별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른 조사·조치 】



구체적으로 ‘산불’과 관련하여서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① 입산통제구역의 지정⁴⁾ ②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의 설치 ③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⁵⁾⁶⁾

반면, ‘산사태’와 관련하여서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5년 마다 산사태등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추가적 조사가 필요한 지역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②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③ 사방시설의 설치 ④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

4) 참고로 현재 입산통제구역은 봄철·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지정함.

- 입산 통제 182만ha(전체 29%), 등산로 폐쇄 7,598km(전체 24%)

5) ‘산림병해충’과 관련하여서는 ‘산불’ 관련 규정의 구조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음. 즉,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산림병해충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산림청장에게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6) 「산림재난방지법」 제17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 한정한다.

1. 「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와 산불예방·진화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7) 「산림재난방지법」 제21조(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등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등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조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 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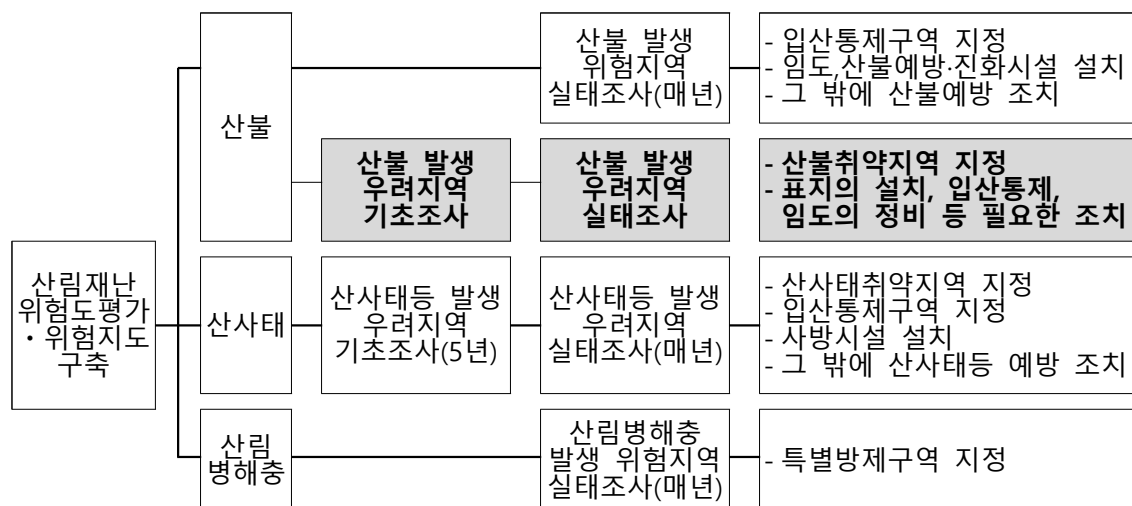
1.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변경·고시 및 해제
2. 「산림보호법」 제15조에 따른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
3.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의 설치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산불과 관련하여서도 산사태 관련 조사·조치 규정과 유사하게 산불발생우려지역 기초조사 또는 산불취약지역(또는 산불발생우려지역) 지정 관련 규정 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산불 발생에 취약한 지역 등에 대하여 산불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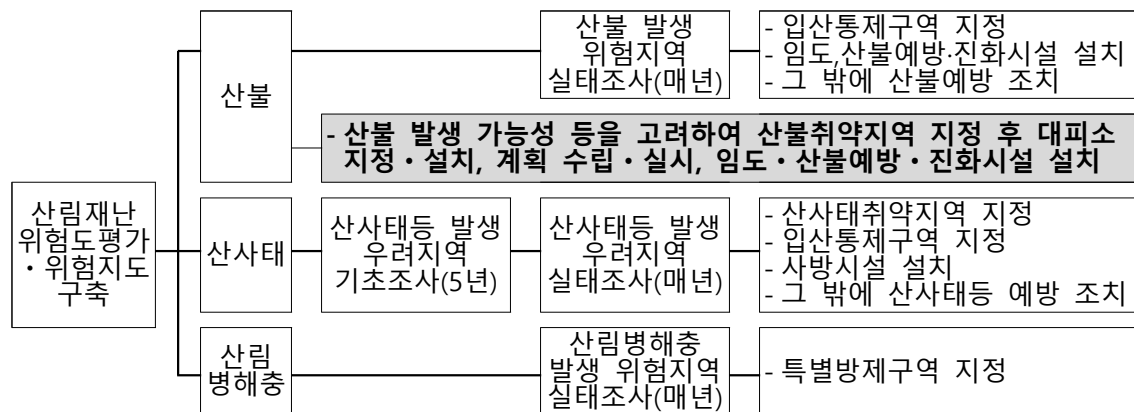
【 김대식의원안에 따른 조사·조치 】



【 김예지의원안에 따른 조사·조치 】



【 김소희의원안에 따른 조사·조치 】



다만, 이미 시행예정법률에서 산불 발생 위험지역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산불발생취약지역 지정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고, 산불발생취약지역은 산사태취약지역과 달리 광범위하다는 산림청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산사태취약지역과 달리 산불은 대부분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취약지역(또는 산불발생우려지역) 지정 시 사유림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⁸⁾

8) 산불발생 원인('15~'24년): 입산자실화 31%, 논·밭두렁 및쓰레기 소각 24%, 담뱃불 7%, 건축물화재 6% 등

나. 국립공원 발생 산불 관련 재난방지 주체 변경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을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정의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산불진화단 등의 구성·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임이자의원안은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에게도 산불진화단 등의 구성·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산불경보 발령 시 입산통제 등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이며(임이자의원안 제30조·제37조),

박홍배의원안은 산림재난방지기관에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을 추가하려는 것임(박홍배의원안 제2조).

현 행	임이자의원안 (제2209729호)	박홍배의원안 (제2209828호)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 방지법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 방지법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 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제2조(정의) ----- -----.	제2조(정의) ----- -----.
1. ~ 9.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 ~ 9. (현행과 같음)
10. “산림재난방지기관” 이란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u>지방자치단 체 및 지방산림청을 말</u>		10. ----- ----- ----- <u>지방자치단 체, 지방산림청 및 「자</u>

현 행	임의자의원안 (제2209729호)	박홍배의원안 (제2209828호)
한다.		<u>연공원법」 제4조에 따</u> <u>른 공원관리청(같은 법</u> <u>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u> <u>구역에서 발생하는 산</u> <u>림재난 방지에 관한 업</u> <u>무로 한정한다)-----</u> <u>-----.</u>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생 략)	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현행과 같음)	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국립공원공단 법」에 따른 공원사무소 의 장은 산불경보가 발 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 준에 따라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국립공원공단 법」에 따른 공원사무소 의 장(이하 “공원사무소 의 장”이라 한다)-----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 성·운영) ① (생 략)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 성·운영) ① (현행과 같음)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 성·운영)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② <u>산림재난방지기관의</u> <u>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u>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u> <u>정하는 산불진화 교육과</u> <u>훈련을 받은 사람으로</u>	② <u>산림재난방지기관의</u> <u>장 및 공원사무소의 장-</u> ----- ----- -----	

현 행	임의자의원안 (제2209729호)	박홍배의원안 (제2209828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 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③ (생 략)	----- -----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 터 시행한다.	----- ----- -----. 부 칙 이 법은 2026년 4월 1일부 터 시행한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는 공원으로, 현재 23개의 국립공원이 지정·관리되고 있으며,⁹⁾ 환경부 소관 공공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서 국립공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아 관리·운영 중임.¹⁰⁾

국립공원에는 매년 산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도 대형산불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국립공원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남.¹¹⁾

9) 참고자료3: 국립공원 현황

10)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의 각각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관리한다.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공단,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자연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임·위탁된 업무의 범위에서 이들을 그 자연공원의 공원관리청으로 본다.

11) 조선일보, “국립공원에 난 산불, 국립공원은 손 못대…‘3분의1 소실’ 주왕산 피해 키워”, 2025. 4. 19.

URL: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5/04/09/NKHXP242VGL3LO6RS4CA63CIA/>

【 연도별 국립공원 산불 발생 현황 】

(단위: 건, ha)

구분	합계	2020	2021	2022	2023	2024
발생	44	8	4	18	13	1
피해	146.8	2.73	1.78	10.42	131.78	0.09

※ 자료: 국립공원공단, 「2025 국립공원 기본통계」, 2025. 3.

국립공원은 풍부한 종다양성을 지닌 자연 생태지역으로 유전자원의 보고(寶庫)이자 다양한 자연적·문화적 정서함양을 위한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유산으로 높은 보전가치를 지니고 있어 산불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을 산림재난방지기관이 아닌 ‘산불유관기관’ 및 ‘산사태유관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고,¹²⁾ 산림청에 따르면 시행예정법률의 시행령에서도 환경부 및 국립공원공단을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만 규정할 것으로 예정되고 있어,

12) 「산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2. “산사태유관기관”이란 산사태예방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4.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② 법 제2조제12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및 국무조정실

3.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부 또는 국립공원공단의 권한 및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¹³⁾

이에 개정안은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산불에 대한 대응체계의 주체에 환경부 또는 국립공원공단을 추가하고 국립공원에 특화된 산불진화단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¹⁴⁾¹⁵⁾

국립공원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산림재난방지와 국립공원 내 산불에 대한 신속한 현장 파악 및 초동 대응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산림청은 산림의 관할 행정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만 해당하고 국립공원 관련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법」에서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이고,¹⁶⁾

환경부는 임의자의원안에 대하여는 국립공원에 특화된 산불 진화단 등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박홍배의원안에 대하여는 산림재난방지기관으로 ‘공원관리청’이 아닌 ‘국립공원공단’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며,

13) 경북일보, “국립공원 산불 대응체계 허술…초동진화 권한 부재 드러나”, 2025. 4. 17.

URL: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38431>

14) 임의자의원안의 ‘공원사무소의 장’은 국립공원공단의 하부조직인 ‘공원사무소’의 장을 의미하며, 박홍배의원안의 ‘자연공원법」제4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국립공원 구역에서 발생하는 산림재난 방지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은 환경부장관을 의미함.

15) 참고자료4: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6) 또한 국립공원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므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관리 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가 이미 존재한다고 설명함.

기획재정부는 임의자의원안에 대하여 산불 진화는 현재 산림청에서 수행하여 관련 인력·장비도 산림청 예산을 통해 확충 중인데, 국립공원에 대하여도 중복하여 설치하는 경우 비효율적인 인력·장비 운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① 국립공원에 특화된 산불 대응체계의 필요성과 ② 산림재난방지 체계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의 가능성, ③ 관계 부처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 산불 예방·진화 절차에 소방청장과의 협의 절차 추가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 소방청장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각종 조치의 절차에 소방청장의 협의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임(박상웅의원안 제9조제2항·제17조제2항·제35조제1항, 제37조제1항후단 신설).

현 행	박상웅의원안(제2209510호)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9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위험지도) ① (생 략)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u>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u>의 <u>장</u>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제17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① (생 략)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u>기초로</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조치는 특별자치시장·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9조(산림재난 위험도평가·위험지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u> <u>의 장(소방청장을 포함한다)</u>-----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7조(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u>기초로 소방</u> <u>청장과 협의하여</u>----- ----- -----.

[illegible]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재난 위험지도 배포 대상기관인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을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¹⁷⁾ 현재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으며, 현행 「산림보호법 시행령」은 “산불유관기관”에 소방청을 포함하고 있음.¹⁸⁾

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라 재난관리주관기관(산림청)은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산불현장을 통합 지휘함.¹⁹⁾²⁰⁾

시행예정법률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소방청, 군, 경찰, 공단 등)을 소집하여 산불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임무를 부여하며, 각 기관은 통합지휘본부장에게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¹⁾

17)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이란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8) 「산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불방지 업무와 관련되는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①「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및 해양경찰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국립공원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철도공사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0) 참고자료5: 산불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기관 역할

21) 「산림재난방지법」 제35조(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등) ① 제34조에 따라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는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이 발생한 현장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산

개정안은 이러한 시행예정법률의 산불 대응체계를 개편하여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에 소방청장을 포함하고,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소방청장과 협의 후 산불 진화를 지휘하고 산불진화단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소방 전문인력을 활용한 효과적인 산불예방과 대응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은 시행예정법률의 체계에 따라 현재 마련 중에 있는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시행령 마련 시 현행 「산림보호법 시행령」과 같이 소방청을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포함할 예정이라는 산림청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소방청장과의 협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에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소방청도 산불현장대책회의에 참여하는 점, 시행예정법률 및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관서는 소방지원활동을

불 진화를 지휘하고 진화인력에 대하여 진화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장(이하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불현장에 지원된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소집하여 산불현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임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6조(협조)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 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 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소방관서(「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한정한다)

2.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3. 군부대

4. 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

5. 기상청 및 지방기상청

6.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하부조직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재난 관련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에 파견된 사람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대상·방법·절차·규모 및 경비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²²⁾ 소방청장과의 협의 절차가 추가되는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이 지연되어 산불 진화의 효과성이 저하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정 시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으로 소방청을 포함할 예정이고,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인 ① 입산통제구역 지정은 관할 행정청의 역할이며, ② 임도 및 산불 예방·진화시설의 설치 등은 산림사업으로 산림분야 전문인력인 산림청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역할이므로,²³⁾ 소방청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임.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기본법」 및 「산림재난방지법」에 산림청과 소방청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산불진화단(공무원)의 산불 진화,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의 지휘·통솔 업무 또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역할이므로,²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대응을 위해 소방청장과 협의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22)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2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생활숲·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②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4) 「산림재난방지법」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운영) 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산불의 진화

2. 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의 지휘·통솔

라. 산불위험지수 관련 산불위험 정보 제도 신설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불위험지수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매일 계산해 알리도록 규정하고, 산불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산불위험 정보”의 발령 권한과 조치 의무를 부여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실화 등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안 제14조의2, 제76조제4항 및 제79조제1항 신설)

현 행	김 위 상 의 원 안 (제2210567호)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산불조심기간 설정 등) ① <u>산림청장은</u>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이 조에서 “산불위험지수”라 한다)를 <u>계산하여</u>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③ (생략) <u><신설></u>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산불조심기간 설정 등) ① <u>산림청장은 기상청장과 협의하여</u>----- ----- -----이하----- -----매일 계산하여-----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산불위험지수 정보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는 극심,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의 등급을 정한다. ② 산불위험지수가 극심 또는 매우

현 행	김위상의원안(제2210567호)
제76조(벌칙) ① ~ ③ (생략) <u><신설></u> ④·⑤ (생략) 제79조(과태료) <u><신설></u> ① ~ ④ (생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u>높음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주민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제3항²⁵⁾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산불위험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u> ③ 제2항에 따라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논두렁·밭두렁 또는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금지 2.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농기 허가 중지 3. 입산통제구역 입산허가 중지 제76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79조(과태료) ① 제14조의2제3항제1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⑤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⑥ -----제5항----- ----- -----

현 행	김위상의원안(제2210567호)
구청장, 지방산림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청장이 산불위험지수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⁶⁾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고온건조한 기상 조건과 강풍 등 산불 발생 요인이 증가하여 전세계적으로 산불의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가 확대되면서, 산불을 막기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 및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²⁷⁾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
2.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

26) 「산림재난방지법」 제14조(산불조심기간 설정 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에 있는 불이 탈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 발생의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이하 이 조에서 “산불위험지수”라 한다)를 계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기간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이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7) 산림청 보도자료, “기상 변화가 키운 불씨,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2025. 4. 4.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기상청장과 협의하여 매일 산불위험지수를 계산하여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산불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에 대한 산불위험 경보 발령 권한 및 조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실화 등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산불 위험 정도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산불 예방 조치를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산림청은 행정구역별로 산불위험지수를 계산하여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홈페이지²⁸⁾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주기(매일)를 명시하는 것은 오히려 산불위험지수에 관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게 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현행 「산림보호법」과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청장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이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²⁹⁾

28) <http://forestfire.nifos.go.kr>

29) 「산림보호법」 제32조(산불경보의 발령 및 조치)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청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국립공원공단 소속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림재난방지법」 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이 조에서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때 현행 「산림보호법 시행령」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발령하는 기준으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의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³⁰⁾³¹⁾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제도와 개정안에 따른 “산불위험경보” 제도가 서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산불위험 경보 발령 지역에서의 중대 과실 실화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논두렁·밭두렁 또는 생활폐기물 소각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기존 시행예정법률의 벌칙 및 과태료 규정³²⁾³³⁾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 및 금액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불위험지수 산출 시 기상청장과의 협의 절차를 추가하는 규정에 대하여 산림청과 기상청은 산불위험지수의 결정은 산불 재난관리주관

30)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3조(산불경보의 발령) ① 산림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9의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에 따른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의9] 산불경보의 발령기준(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관련)

산불경보 구분	발령기준
관심 (청 색)	○ 산불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의 경보 발령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주의 (황 색)	○ 전국의 산림 중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불위험지수(이하 “산불위험지수”라 한다)가 51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계 (오렌지색)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각 (적 색)	○ 전국의 산림 중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퍼센트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택·국가유산 등 주요시설 20동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비고>

1. 산림청장은 산불재난 위기발생 가능성을 평가하여 그 수준에 따라 산불경보를 발령하되, 법 정부 차원의 조치가 요구되는 심각한 산불경보를 발령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산불경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산불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2. 산불위험지수는 국립산림과학원장이 산불조심기간 또는 산불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에 산림에 있는 가연 물질의 연소 상태와 기상 상태에 따라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31) 시행예정법률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과 유사하게 하위법령을 규정할 예정임.
- 32) 산불위험 경보 발령 지역에서의 중대 과실 실화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시행예정법률에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33) 논두렁·밭두렁 또는 생활폐기물 소각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는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시행예정법률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관인 산림청의 고유 권한이므로 기상청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며,

산불위험지수의 등급화 및 산불위험 경보 발령 등의 규정에 대하여 산림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³⁴⁾ 및 시행예정법률 제30조³⁵⁾에 따라 위기경보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인 산림청이 발령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의5제1항제1호 단서의 상황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재난 위기경보의 발령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③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심각 경보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우선 조치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신속하게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5) 「산림재난방지법」 제30조(산불경보 발령 및 조치) ①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이 조에서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및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경보가 발령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경보별 조치기준에 따라 입산 통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마. 산불예방계획 및 산불 관련 시책

개정안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 발생에 대한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마련과 산불예방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김대식의원안 제16조제1항 신설 및 제6항, 이성권의원안 제16조제1항 및 제7항 신설).

현 행	김대식의원안 (제2209749호)	이성권의원안 (제2210054호)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 방지법 제16조(산불 예방 등) <u><신 설></u>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 방지법 제16조(산불 예방 등) ① <u>산림청장은 효율적인 산 불 예방을 위하여 산불 발생에 대한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민관 협조체계 구 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u>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 방지법 제16조(산불 예방 등) ① <u>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산불예방계획을 수 립하고 시행하여야 한 다.</u> <u>1. 산림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산불예 방 교육</u> <u>2. 제18조에 따른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에 대한 홍보</u> <u>3. 그 밖에 산불 예방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① ~ ④ (생략)	② ~ ⑤ (현행 제1항부 터 제4항까지와 같음)	② ~ ⑥ (현행 제1항부 터 제5항까지와 같음)

현 행	김대식의원안 (제2209749호)	이성권의원안 (제2210054호)
⑤ 산림청장 또는 산림 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 불방지에 관한 연구·조 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산불방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u><신 설></u>	⑥ ----- ----- -----연구·조 사 및 숲가꾸기(풀베기, 쭉아베기 등)----- -----.	⑦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불예방계획 시행 에 필요한 예산을 산림 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 터 시행한다.

최근 산불 발생이 점차 상시화·대형화되고 산불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도 발생하고 있어 산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산불예방 교육 실시 등을 포함하는 산불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 원인별 산불발생 현황 】

(단위 : 건)

구 분	10년평균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건수 (건)	비율 (%)										
합 계	546	100	623	391	692	496	653	620	349	756	596	279
입 산 자 실 화	171	31	193	107	254	158	179	217	133	253	170	49
논·밭두렁소각	60	11	99	79	94	67	69	49	22	44	56	24
쓰레기소각	68	13	86	80	110	58	89	65	27	59	73	28
담뱃불실화	35	7	22	14	24	12	22	75	34	53	56	36
성묘객실화	17	3	19	18	22	26	20	9	16	14	23	6
어린이불장난	2	-	5	1	2	1	2	1	3	-	1	1
건축물화재	34	6	13	13	36	41	58	54	20	51	41	14
기 타	159	29	186	79	150	133	214	150	94	282	176	121

※ 자료 : 산림청

이에 개정안은 산불 발생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민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산불예방교육 및 홍보 등 산불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산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산불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신속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시행예정법률은 제7조에서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교육·훈련, 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16조에서 산불방지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 확보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에서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제57조는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개발사업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으므로,³⁶⁾ 개정안은 이와 다소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은 개정안이 시행예정법률과 중복되나, 김대식의원안 제16조제6항은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및 숲가꾸기(풀베기, 솥아베기 등)”를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및 산불예방을 위한 숲가꾸기”로 수정하여, 다양한 숲가꾸기 사업 중 산불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경우 개정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³⁷⁾³⁸⁾

36) 「산림재난방지법」 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재난방지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산림재난방지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산림재난방지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교육·훈련, 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산불 예방 등) ①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이나 사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방지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산불진화단 등 구성·운영) 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5.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제57조(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 및 국제협력)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개발사업(이하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산림재난방지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를 활용하는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림재난방지 연구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재난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 및 정보의 교류, 홍보, 조사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책과 관련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된 국제협력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산림재난방지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37) 숲가꾸기 : 풀베기, 덩굴류제거, 솥아베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38) 참고자료6: 산불예방 숲가꾸기

바. 산불진화인력 관련

1) 경비 지원 관련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으로 조직된 산불진화단 및 산사태대응팀을 설치·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37조 및 제41조),

개정안은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대응팀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의 보수와 수당 및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장동혁의원안 제37조제3항 및 제41조제3항 신설, 윤준병의원안 제37조제3항 신설).

현 행	장동혁의원안 (제2209509호)	윤준병의원안 (제2210432호)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 방지법 제37조(산불진화단 등의 구성·운영) ①·② (생 략) <u><신 설></u>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 방지법 제37조(산불진화단 등의 구성·운영)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u>산림청장 및 산림재난 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진</u>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 방지법 제37조(산불진화단 등의 구성·운영)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u>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는 산불진화단, 산불 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u>

현 행	장동혁의원안 (제2209509호)	윤준병의원안 (제2210432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산사태대응팀 등 구성·운영) ①·② (생략) <u><신 설></u> ③ (생략)	<u>화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1조(산사태대응팀 등 구성·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대응팀 및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u>특수진화대의 보수와 위험근무수당 및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구성·운영 및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산사태대응팀 등 구성·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은 상시화·대형화되고 있음에도 그 대응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있음.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되는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사태현장 예방단(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일일 단가 80,240원과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 수당, 출장비 등 산림재난 관련 수당을 받고 있으며,³⁹⁾

산불재난특수진화대(무기계약근로자)는 3,092천원/월(기본급 2,801천원/월, 복지·명절·급식비)의 임금과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 수당, 출장비, 위험수당 등 산림재난 관련 수당을 지급받고 있음.⁴⁰⁾

또한, 현행 산불·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에 대한 임금·수당 등의 지원은 「근로기준법」 및 산림청 규정(지침)에 근거하고 있고, 시행예정법률에는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산불·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에 대해 보수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의 산불·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 중 “산불진화단”과 “산사태대응팀”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 또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9) 참고자료7: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개요

40) 참고자료8: 산불·산사태 대응인력 현황 및 임금·수당 지급 체계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운영되어
개정의 실익이 없어 보임.

둘째, 장동혁의원안 제37조제3항 중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시행예
정법률에서 “산불예방진화대”로 명칭하고 있으므로, 법률 용어를 시행
예정법률에 맞게 통일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은 산불·산사태 대응업무 종사자에게 업무 수행을 위한 경
비 지급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임.

2) 안전사고방지대책 및 작업중지 조치

개정안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불진화단 등에 대한 안전사고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산불예방진화대의 산불 진화 작업을 일시 중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김성원의원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현 행	김성원의원안(제2209514호)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u><신 설></u>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7조의2(산불진화단 등에 대한 안전사 고방지대책 수립·시행) ① 산림청장 은 산불진화단,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 불재난특수진화대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사고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사고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u><신 설></u>	제37조의3(작업중지 조치) 산림청장 또 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불예방진화대의 산불 진화 작업을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1. 심각 단계의 산불경보가 발령된 경 우 ⁴¹⁾ 2. 그 밖에 인명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 행	김성원의원안(제2209514호)
	<u>경우</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년 3월 영남, 울산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하여 10만 4천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고,⁴²⁾ 이 과정에서 산불진화에 투입된 진화인력 5명(공무원 1, 민간진화대원 3, 민간기장 1)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⁴³⁾

당시 경북 의성 산불진화헬기 추락 직후에는 산림청장이 조종사 피로도 및 헬기 정비 등을 고려하여 전국에 투입된 산불진화헬기 일시 운항중지 및 그 단계적 해제 조치를 내린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불진화 인력의 생명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안전사고방지대책의 수립·시행과 위험 상황에서의 작업중지 조치를 법제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산불진화의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 사업주(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나 근로자(산불진화인력)가 작업중지를 할 수 있으므로 시행예정법률에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 논의가

41) 참고자료9: 산불경보의 발령기준

42) 최대 순간풍속 27m/s 이상의 매우 강한 돌풍으로 산불이 급속히 확산됨.

43) 경남 산청·하동 산불 진화('25.3.22.)에 투입된 창녕군 소속 공무원 1명, 진화대원 3명 사망
경북 의성('25.3.26.) 산불진화에 투입된 임차헬기 추락으로 기장 1명 사망

필요할 것으로 보임.⁴⁴⁾

산림청과 고용노동부는 사업자 및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및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에 규정되어 있어 개별법에서 별도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임.

44)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상자에 대한 보상

시행예정법률은 시·도지사의 통합지휘에 따라 시·군·구 소속 인력이 관할 외 지역에서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통합지휘한 시·도지사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박상웅의원안 제67조제2항 신설).

현 행	박상웅의원안(제2209536호)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67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생략) <u><신설></u>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67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통합지휘에 따라 시·군·구 소속 인 력이 관할 외 지역에서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상금은 통합지휘한 시·도지사가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2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7 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한다.

2025년 3월 경남 산청·하동 산불 진화에 투입된 창녕군 소속 공무원 1명과 진화대원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경남도지사 산불 진화 통합지휘).

【 산불 진화 통합지휘권자 】

대응단계	초기대응 (10ha 미만)	확산대응		
		산불 1단계(10~50ha)	산불 2단계(50~100ha)	산불 3단계(대형산불)
지휘권자	시장·군수·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 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 국유림관리소장 (2개 이상 시·군·구 ⇒ 시·도지사 지휘)	시·도지사 (1,000ha 이상 또는 2개 이상 시·도 ⇒ 산림청장 지휘)

현행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상 보상청구서 제출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불 진화 중 사상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그 외의 국유림·공유림 및 사유림의 산불 진화 중 사상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⁴⁵⁾ 산림청에 따르면 시행예정법률의 경우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음.

그러나 2025년도 대형산불로 인한 진화 사상자 보상의 경우, 현행법령상 보상금 신청기관(산청군 또는 창녕군)과 보상주체(경상남도 또는 산청군)의 해석이 불분명하고, 진화대를 협조 요청한 통합지휘권자(경상남도)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45)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보상기준 및 보상청구)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불피해 사상자 보상청구서를 작성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불로 인한 진화작업, 인명구조작업 또는 산불예방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2. 제1호 외의 국유림·공유림 및 사유림의 산불로 인한 진화작업, 인명구조작업 또는 산불예방작업, 산불진화 교육훈련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필요성이 제기됨.⁴⁶⁾

이에 개정안은 산불 진화 통합지휘에 따라 관할 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상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통합지휘권자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재난방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체계이고,⁴⁷⁾ 현재 시행예정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하위법령에서 입법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상청구서 제출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 ‘시·도지사’가 포함되며, 현행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사상자에 대한 보상청구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임.

46) 산림청이 의뢰한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 결과, 보상금 신청기관은 산청군(산불발생) 또는 창녕군(진화대 고용)으로 어느 한 곳으로 특정할 수 없고 피해자의 선택사항이며, 보상주체는 진화대를 협조 요청한 경상 남도와 사상자가 발생한 최초 산불발화지역(사유림)인 산청군이 내부적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답변임.

47) 「산림재난방지법」 제67조(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산림재난의 발생에 직접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산림항공기 관련

1) 산림항공기 운영 계획 수립·시행

개정안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의 확보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서천호의원안 제55조제2항 신설).

현 행	서천호의원안(제2209464호)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산림항공기 운용) ① (생략) <u><신설></u> ② (생략)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산림항공기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정비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의 확보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립·시행하고, 이를 매년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함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재 산림청 소관 헬기 보유 대수는 50대(2025년 4월 기준)이며, 정비인력은 90명(임기제 78, 일반직 12)으로 1대당 1.8명 수준임.⁴⁸⁾

【 최근 5년간('21~'25.4월) 산림항공기 정비인력 현황 】

(단위 : 대, 명)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4.
보유 대수		47	48	48	50	50
정비인력	계	89	90	90	90	90
	일반직	12	12	12	12	12
	임기제	77	78	78	78	78
1대당 정비인력 수		1.9	1.9	1.9	1.8	1.8

※ 자료 : 산림청

산림청은 주간에만 헬기를 운행하고 있어 24시간 3교대 근무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소방청, 경찰청 등과 달리 정비인력 수가 적으나,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라 산불이 대형화·일상화 및 동시다발화 추세로⁴⁹⁾ 안정적인 헬기 운영 등을 위해 정비인력 확충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48)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정비사는 항공기 대수별 1명과 관리소별 추가 1명을 배치하되, 대형헬기(S-64)와 수리온 헬기는 대당 2명씩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산림항공본부 인사관리규정」(산림항공본부훈령 제326호, 2021.12.31.) 제3조(전문임기제공무원 정원 배치 기준) 본부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인력배치 시 기관별 정원은 각 기관별 헬기배치계획 및 운영 대수를 기준으로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생략)
2. 정비사

가. 산림항공관리소 : 항공기 대수 + 1명. 단, S-64, 수리온 기종은 대당 2명을 배치할 수 있다.

나. 삭제

다. 본부 : 운항정비팀에 한해 관리소 기준 적용, 그 외는 업무성격·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배치

49) 산불 현황 : ('22년) 24,797ha → ('23년) 4,992ha → ('24년) 123ha

* '25.3.22~30.(9일간) 산청, 경북(5개 지역), 울산지역 102,686ha 피해

【 타 기관 대비 정비인력 비교('23.6월 기준) 】

구 분	산림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경찰청
대 수	50대	19대	33대	19대
정비사 정원	90명	105명	132명	63명
대당 인원	1.8명/대	5.5명/대	4명/대	3.3명
근무 형태	주간	3교대	3교대 3명 / 주간 1명	3교대

※ 주1: 소방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별표3)에 항공기 1대 기준 4명을 명시

※ 주2: 해양경찰청·경찰청은 별도 정비인력 기준 없음

※ 자료 : 산림청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항공기 운행에 필요한 적정 정비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여 정비품질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시행예정법률 제7조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재난방지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림재난방지 장비 중 산림항공기만 운영 계획을 별도로 수립·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는지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⁵⁰⁾

50) 「산림재난방지법」 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재난방지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산림재난방지 인력·시설·장비 등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산림재난방지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교육·훈련, 연구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림청도 「산림재난방지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매년) 수립 시 이미 ‘산림재난방지 인력·시설·장비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기본계획은 상임위 보고 대상으로, 산림항공기 운행에 필요한 적정 정비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계획이 기본계획 등에 포함된다는 의견임.

-
- ②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림재난방지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산림청장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은 산림재난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⑦ 산림청장,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과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산림항공기·장치·부품의 기령 및 내구연한

시행예정법률은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산림항공기 및 장치·부품에 대한 기령(운영연한)과 내구연한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기령(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초과한 사용의 금지와 예외사항을 규정하며, 정부의 예산 확보 의무와 기령 및 내구연한의 홈페이지 공개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박덕흠의원안 제55조제2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윤준병의원안 제55조의2 신설, 고동진의원안 제55조의2 신설).

현 행	박덕흠의원안 (제2209686호)	윤준병의원안 (제2210432호)	고동진의원안 (제2209454호)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u><신 설></u>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u>제55조의2(산림항공기 기령 등)</u>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u>제55조의2(산림항공기 구매 및 임차 등 지원·운영)</u> ① (생략)
제55조(산림항공기 운용) ① (생략)	제55조(산림항공기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와 산림항공기의 부품에 대하여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① 산림청장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와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에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기령(機齡), 안전관리 및 부품 교체·정비 등 지원,

현 행	박덕흠의원안 (제2209686호)	윤준병의원안 (제2210432호)	고동진의원안 (제2209454호)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u>대한 기령 및 내구연한(이하 이 조에서 “기령 및 내구연한”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u>	<u>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신 설>	③ <u>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초과한 산림항공기 또는 산림항공기의 부품을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산림항공기의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운영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u>	② <u>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령 및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거나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항공안전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감항증명의 유효기간까지는 산림항공기 또는 산림항공기의 장치 및 부품을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u>	
<신 설>	④ <u>산림청장은 산림항공기 도입이 지연 및 중단되는</u>		

현 행	박덕흠의원안 (제2209686호)	윤준병의원안 (제2210432호)	고동진의원안 (제2209454호)
<신 설>	<u>등 부득이한 사유로 산림항공기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운영연한을 초과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u> <u>⑤ 그 밖에 산림항공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u>③ 정부는 기령 및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산림항공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u> <u>④ 산림청장은 보유 중인 산림항공기의 기령 및 내구연한 현</u>	

현 행	박덕흠의원안 (제2209686호)	윤준병의원안 (제2210432호)	고동진의원안 (제2209454호)
	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5년 5월 기준 산림청 보유 산림항공기(50대) 중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경년항공기 비율은 44%(22대)이고,⁵¹⁾ 30년을 초과한 항공기의 비율은 24%(12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²⁾

【 산림청 보유 산림항공기 현황 】

(단위 : 대)

구분	계	S-64	KA-32	KUH-1	AS350	Bell206
보유	50	7	29	3	4	7
20년 초과	22	1	20	-	1	-
30년 초과	12	-	3	-	2	7

※ 자료 : 산림청

51) 기령(機齡) 20년 초과 항공기를 '경년항공기'로 정의(「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7조제2항제2호)

52) 「항공안전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공기”란 공기의 반작용(지표면 또는 수면에 대한 공기의 반작용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비행기 나. 헬리콥터 다. 비행선 라. 활공기(滑空機)

4. “국가기관등항공기”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소유하거나 임차(賃借)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용·경찰용·세관용 항공기는 제외한다.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搜索)·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산림항공기의 58%를 차지하는 KA-32 헬기(29대)는 기체에 대하여 제작사에서 정한 내구연한(비행시간 기준)이 있으나, 나머지 기종의 경우 제작사에서 정한 기체에 대한 내구연한은 없고 주요 장치·부품에 대한 내구연한은 있는 것으로 파악됨.⁵³⁾

【 KA-32 헬기 내구연한 】

구분	보유대수	도입연도	내구연한	내구연한 도달연도 (연 150시간 운영 기준)
KA-32T(중형)	26대	1996년	6천시간 (비행시간)	2036년
KA-32A(중형)	3대	2006년	16천시간 (비행시간)	2118년

※ 자료 : 산림청

한편, 모든 산림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성⁵⁴⁾이 있다는 증명(감항증명)을 신청하고 검사결과 감항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급되는 감항증명서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운항이 금지되어 있음.⁵⁵⁾

53) 산림청은 내구연한이 있는 장치와 부품의 경우 제작사에서 정한 기간(시간)이 도래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체하고, 내구연한이 없는 경우에는 주기점검을 통해 부품 상태에 따라 교환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함(KA-32 헬기의 경우 주요 부품 29개 품목의 내구 연한 존재).

54) 감항성 : 정비·수리·개조된 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성능(「항공안전법」 제2조제5호라목)

55) 「항공안전법」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①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준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2. 특별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그런데 산림항공기는 산불 진화 시 발생하는 연무, 담수를 위한 수
상비행 등의 부식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급격한 기동을
필요로 하는 비행환경, 장애물 등 위험 요인이 많은 상황에서 산불 진
화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노후화된 산림항공기는 안전사고에 특히 취
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림항공기의 특성에 맞는 내구연한을 설정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산림항공기 기체 및 산림항공기의 장치·부품에 대하
여 기령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림항공기 임무 특성을 고려한 내구연한을 설
정하고, 기체 및 부품의 적기교체를 통해 산림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
용한계(運用限界)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2.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3.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

⑤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기령 및 소유자등(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
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을 취소하
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항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기가 감항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⑧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지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
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정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청이 보유 운영 중인 S-64 등 5개 기종의 산림항공기는 각 기종별 중요부품의 내구연한을 제작사가 확정하고 있고,⁵⁶⁾ 제작사에서 정한 내구연한이 도래하면 「항공안전법」에 따른 감항성 검사 시 교체하고 있는바,⁵⁷⁾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산림항공기 및 장치·부품의 운영 연한(기령) 및 내구연한을 부령으로 정하되, 예외적으로 운영·사용 가능한 경우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산림항공기의 기령 등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⁵⁸⁾

56) 참고자료10: 내구연한이 있는 중요부품 목록

57) 「항공안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감항검사관이 제작사 정비교범에 따른 감항검사 수행 후 감항증명을 발행함.

58) 의안번호 제2208789호, 2025.3.12. 회부

3) 산림항공기 구매·임차 비용 지원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청장이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⁵⁹⁾

개정안은 국가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항공기 구매·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고동진의원안 제55조의2제1항 신설).

현 행	고동진의원안(제2209454호)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u><신 설></u>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의2(산림항공기 구매 및 임차 등 지원·운영) ① 국가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략)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9) 「산림재난방지법」 제55조(산림항공기 운용)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1. 산림재난 예방·대비·대응·조사·복구
 2.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구호 활동
 3. 산불진화훈련 또는 헬기의 기능시험·이동·조종기술 훈련 등을 위한 비행
 4. 그 밖에 산림행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대형산불이 증가하고 있으므로,⁶⁰⁾ 신속한 진화 및 초동 대응을 위해 산림청은 13개 산림항공본부 및 관리소에 산불진화헬기(50대)를 배치·운영 중에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헬기를 임차(78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⁶¹⁾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대응에는 한계가 있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임차헬기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산림항공기 구매 또는 임차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임차헬기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산불 조기진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시행예정법률 제16조제3항은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⁶²⁾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법체계상 해당 조항에 임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60) 연평균 산불피해(대형산불 건수) : ('10년~'19년) 857ha(1.3건) → ('20년~'24년) 8,368ha(6건)

- '23.4.2. 전국에 산불 35건, 4.3. 대형산불 5건 동시다발 발생

- '25.3.22.~30(9일간) 경북·경남·울산 지역 초대형 산불발생으로 102,686ha 피해

61) 지방자치단체 총 78대 임차 : 경기 18대, 강원 7대, 충북 4대, 충남 5대, 전남 9대, 전북 2대, 경북 19대, 경남 7대, 대구 3대, 부산 2대, 인천 1대, 울산 1대

62) 「산림재난방지법」 제16조(산불 예방 등) ③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산불방지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 진화를 위한 헬리콥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불 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임차 헬기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개정안에서 산림청장은 중앙정부(국가)이므로 법문의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반면, 기획재정부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항공기의 구매 등은 국비로 운영 중이며, 소방업무는 지자체 자치사무로 소방장비(임차헬기 등)는 소방안전교부세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아. 포상의 대상 변경 및 포상금의 지급 범위 규정

시행예정법률은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⁶³⁾

개정안은 포상의 대상에 산불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를 포함하고, 각 포상의 대상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임.(박덕흠의원안 제69조)

현 행	박덕흠의원안(제2210241호)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69조(포상) (생 략) 1. (생 략) <u><신 설></u> 2. ~ 4. (생 략) <u><신 설></u> <u><신 설></u>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69조(포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산불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u> 3. ~ 5.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은 1천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2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 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3) 「산림재난방지법」 제69조(포상)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매년 산불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산림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25년도 대형산불의 경우 막대한 산림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발생하였음.

【 산불 발생에 따른 피해액 현황 】

(단위 : 건, ha, m³, 백만원, 분)

구 분	건 수	면 적	건당피해	피해재적*	피해금액
2015	623	418	0.7	31,591	20,480
2016	391	378	1.0	6,647	15,721
2017	692	1,480	2.1	224,172	80,150
2018	496	894	1.8	100,710	48,583
2019	653	3,255	5.0	501,836	268,910
2020	620	2,920	4.7	486,549	158,141
2021	349	766	2.2	5,641	36,125
2022	756	24,797	32.8	2,925,560	1,346,276
2023	596	4,992	8.4	464,130	285,429
2024	279	132	0.5	5,629	9,244

※ 주: 피해재적이란 산불 연소 피해를 입은 입목의 재적을 말함

※ 자료: 산림청

산불은 피해면적과 화선이 시간경과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산불이 확산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고 진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현재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

체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불 예방 및 조기 대처의 가능성성을 제고하고 있음.⁶⁴⁾⁶⁵⁾

그러나 매년 산불예방 및 진화 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20만원,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최대 300만원 규모의 포상금⁶⁶⁾은 그 지급 규모가 작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포상의 대상에 산불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를 포함하고 각 포상의 대상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범위를 명시하려는 것으로,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산불 진화’는 산불을 예방·대비·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산불방지’에 포섭되는 개념이므로,⁶⁷⁾ 시행예정법률에 따라서도 ‘산불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64) 참고자료11: '25년 산불예방·진화 유공 포상 및 포상금 개요

65) 「산림보호법」 제48조(포상)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산림행정관서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가.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를 위반한 자(제13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3. 산불방지, 산불 발생의 신고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4. 산사태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

66)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3조(포상금의 지급) ③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67)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산림재난방지”란 산림재난으로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피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불을 예방·대비·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이하 “산불방지”라 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포상금의 구체적인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으며,⁶⁸⁾ 시행예정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포상금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산불 진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를 포상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개정의 실익이 없으며, 포상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68)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112신고자 포상)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포상금)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둔 자

2. 제28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자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4.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산불 관련 벌칙 규정 강화

1) 산불 가해자에 대한 형량 상향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과 과실로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데,⁶⁹⁾

개정안은 이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려는 것임.

현 행	서천호의원안 (제2209470호)	윤준병의원안 (제2209551호) 김예지의원안 (제2209843호)	박덕흠의원안 (제2209893호)	이성권의원안 (제2210054호)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 76 조 (벌 칙)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 76 조 (벌 칙)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 76 조 (벌 칙)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 76 조 (벌 칙)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 76 조 (벌 칙)
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 ----- ----- ----- ----- ----- ----- ----- -----	① ~ ③ (현행과 같음)	① ----- ----- ----- ----- ----- ----- ----- ----- -----	① ~ ③ (현행과 같음)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 -----	

69)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벌칙) 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현 행	서천호의원안 (제2209470호)	윤준병의원안 (제2209551호) 김예지의원안 (제2209843호)	박덕흠의원안 (제2209893호)	이성권의원안 (제2210054호)
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 다. ③ (생 략)			-- 2년 ---- ----- ----- --.	
④ 과실로 인 하여 <u>타인</u> <u>또는 자신의</u>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 린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u><신 설></u>	④ ----- ----- ----- ----- ----- -----5 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④ ----- ----- ----- ----- ----- -----5 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	④ ----- ----- ----- ----- ----- -----5 년 이하의 징 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	④ ----- ----- <u>타인</u> <u>소유의</u> ----- ----- ----- ----- -----3 년 이하의 징 역----- ----- ----- --. ⑤ 과실로 인 하여 자기 소 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 공을 위험에 빠뜨린 사람 은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

현 행	서천호의원안 (제2209470호)	윤준병의원안 (제2209551호) 김예지의원안 (제2209843호)	박덕흠의원안 (제2209893호)	이성권의원안 (제2210054호)
⑤ (생 략) <신 설>	⑤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u>제80조(가중죄)</u> <u>제76조제1항</u> <u>부터 제4항까</u> <u>지의 죄를 저</u> <u>질러 사람을</u> <u>사망에 이르</u> <u>게 한 자는</u> <u>각 해당 항에</u> <u>서 정한 형</u> <u>(刑)의 2분의</u> <u>1까지 가중할</u> <u>수 있다.</u>	<u>한다.</u> ⑥ (현행 제5 항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부 칙 (윤준병의원안)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한다. 부 칙 (김예지의원안)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546건의 산불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원인별 산불발생 현황 】

(단위 : 건)

구 분	10년 평균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건수 (건)	비율 (%)										
합 계	546	100	623	391	692	496	653	620	349	756	596	279
입 산 자 실 화	171	31	193	107	254	158	179	217	133	253	170	49
논·밭두렁소각	60	11	99	79	94	67	69	49	22	44	56	24
쓰레기소각	68	13	86	80	110	58	89	65	27	59	73	28
담뱃불실화	35	7	22	14	24	12	22	75	34	53	56	36
성묘객실화	17	3	19	18	22	26	20	9	16	14	23	6
어린이불장난	2	-	5	1	2	1	2	1	3	-	1	1
건축물화재	34	6	13	13	36	41	58	54	20	51	41	14
기 타	159	29	186	79	150	133	214	150	94	282	176	121

※ 자료: 산림청

현행 「산림보호법」은 ①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②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지른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④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예정법률에서는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지른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의 수준을 상향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산림보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검거율은 32%~46% 수준으로,

【 산불 가해자 검거 현황 】

(단위 : 건, %)

연도별	합계	2021	2022	2023	2024	2025.3.9.
산불발생건수	2,108	349	756	596	279	128
검거건수	817	132	247	269	110	59
검거율	38.8	37.8	32.7	45.1	39.4	46.1

※ 자료: 산림청

검거된 산불 가해자 817명 중 25%(204명)만이 징역(43명) 또는 벌금형(161명)에 처해지고 있는바, 산불로 인한 경제적·환경적·사회적 피해 규모에 비해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⁷⁰⁾

70) KBS뉴스, “‘실수’로 시작된 산불…처벌은 솜방망이”, 2025. 4. 9.
URL: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23224>

【 산불 가해자 처벌 현황 】

(단위 : 건)

연도별	산불발생 건수	사법처리 결과(건)					
		계	징역 (집유포함)	벌금	기소유예	내사종결	기타
합계	2,108	817	43	161	105	69	439
2021	349	132	3	22	22	13	72
2022	756	247	23	66	36	37	85
2023	596	269	17	65	34	10	143
2024	279	110	-	8	13	9	80
2025.3.9.	128	59	-	-	-	-	59

※ 주: 기타는 혐의없음, 구약식, 기소중지, 사회봉사명령, 처리 진행중 등

※ 자료: 산림청

이에 개정안은 타인 소유 산림에 대한 방화, 자기 소유 산림에 대한 방화, 타인·자기 소유 산림에 대한 실화에 대하여도 처벌의 수준을 상향하려는 것으로,

산불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산불 가해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비례하는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서천호의원안·박덕흠의원안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의 수준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산림보호법」 상의 처벌의 수준(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과 동일하게 규정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형벌의 균형성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박덕흠의원안은 산불 방화 및 과실의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각 해당 항에서 정한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은 범죄행위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을 가중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정형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⁷¹⁾⁷²⁾ 다만 일부 개별법에서 기본형의 일정 비율로 형을 가중하는 방식을 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⁷³⁾ 적절한 가중처벌 규정 방식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

71)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①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2) 그 외의 개별법에도 형을 가중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정형을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함.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8조(벌칙) ① 고압가스시설을 손괴한 자 및 용기·특정설비를 개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고압가스 시설을 손괴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禁錮)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3조(가중죄)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죄를 저지르면 각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저질러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7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형의 가중처벌)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통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제79조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② 제79조의3 각 호의 죄를 범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철도안전법」 제80조(형의 가중) ① 제78조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79조제1항, 제3항제16호 또는 제17호의 죄를 범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자는 그 죄에 규정된 형의

할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산불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의 초래, 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산불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반면, 법무부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서천호의원안·박덕흠의원안 제76조제11항에서 산림 피해의 경중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7년의 징역형으로 규정하는 것은 비례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산불 예방을 위한 과태료 상향

시행예정법률은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사람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⁷⁴⁾

개정안은 이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현 행	서천호의원안 (제2209470호)	윤준병의원안 (제2209551호) 이성권의원안 (제2210054호)	박덕흠의원안 (제2209893호)
법률 제20751호 산림 재난방지법 제79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에 게는 <u>200만원</u> 이 하의 과태료를 부	법률 제20751호 산림 재난방지법 제79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 음)	법률 제20751호 산림 재난방지법 제79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 음)	법률 제20751호 산림 재난방지법 제7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300만원</u> ---- -----

74) 「산림재난방지법」 제79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린 사람
3.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
- ③ 제1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사람에게는 7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2. 제18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어간 사람

현 행	서천호의원안 (제2209470호)	윤준병의원안 (제2209551호) 이성권의원안 (제2210054호)	박덕흠의원안 (제2209893호)
과한다. 1. ~ 3. (생 략) ③ 제18조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사람에게는 7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 ----- ----- -----.	③ ----- ----- ----- ----- ----- 100 만 원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 ----- ----- ----- 100 만 원 -----.
<신 설>	1. 제18조제1항 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사람		
<신 설>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신 설>	3. 제18조제4항의		

현 행	서천호의원안 (제2209470호)	윤준병의원안 (제2209551호) 이성권의원안 (제2210054호)	박덕흠의원안 (제2209893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u>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1.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u>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및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u> 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u>사람</u> 2. 제18조제4항의 <u>금지명령을 위</u> 반하여 화기, 인 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	<u>금지명령을 위</u> 반하여 화기, 인 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림에 들 어간 사람 <삭 제>	④ ----- ----- ----- ~~--50만원--~~ ----- -----. 1.·2. (현행과 같 음)	④ ----- ----- ----- ~~--50만원--~~ ----- -----. 1.·2. (현행과 같 음)

현행	서천호의원안 (제2209470호)	윤준병의원안 (제2209551호) 이성권의원안 (제2210054호)	박덕흠의원안 (제2209893호)
<u>어간 사람</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산림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 ----- 제3항----- ----- ----- ----- ----- ----- -----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윤준병의원안)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성권의원안)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불은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한 행위로도 발생할 수 있음에도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가 상당한 규모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현행 「산림보호법」은 ①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②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이하 ‘산림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과 소형열기구를 날린 사람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③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사람과 ④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불을 피운 사람, 화기, 인화 물질 또는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사람에 대하여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예정법률에서는 ② 산림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과 소형열기구를 날린 사람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③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꽂초를 버린 사람에게는 7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금액을 상향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산림보호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당수의 산불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바,

【 원인별 과태료 부과건수 】

(단위: 건)

연도별	계	무단입산	불법소각	흡연·공초	화기물 입산	기타
연평균	1,352.6	416.6	730.4	89.6	69	47
2020년	1,350	372	784	57	88	49
2021년	1,308	491	628	66	66	57
2022년	1,391	460	653	146	76	56
2023년	1,403	373	833	101	51	45
2024년	1,311	387	754	78	64	28

※ 주: 기타는 산림내 취사, 아궁이 재투기, 가스버너사용,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린 경우 등
 ※ 자료: 산림청

【 원인별 과태료 부과금액 】

(단위: 천 원)

연도별	계	무단입산	불법소각	흡연·공초	화기물 입산	기타
연평균	252,019.2	39,666.6	181,745	13,902.2	7,196.6	9,508.8
2020년	237,824	29,860	180,907	5,677	8,930	12,450
2021년	212,928	39,560	149,985	5,860	7,433	10,090
2022년	235,903	42,053	160,980	13,220	7,670	11,980
2023년	298,973	44,230	215,449	25,564	5,040	8,690
2024년	274,468	42,630	201,404	19,190	6,910	4,334

※ 주: 기타는 산림내 취사, 아궁이 재투기, 가스버너사용,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린 경우 등
 ※ 자료: 산림청

개정안은 산불이 대부분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을 위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산불 예방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입법의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의 강화에 동의하나, 박덕흠의원안 중 제79조제2항제3호는 산사태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에 대한 사항이므로 기존의 과태료 금액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3) 산불 원인제공자에 대한 복구비용 및 진화비용의 청구 근거 마련

시행예정법률은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원인제공자에게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김선교의원안 제49조제2항 삭제, 제74조의2 신설)

현 행	김선교의원안(제2209836호)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49조(산불피해 복구 등) ① (생 략) <u>②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 의 장은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산불피해 복 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청구할 수 있다.</u> <u><신 설></u>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49조(산불피해 복구 등) (현행과 같 음) <u><삭 제></u> <u>제74조의2(비용의 청구)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불 조사 결과 산불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 자에게 산불 진화에 소요된 비용 및 산불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u>

현 행	김선교의원안(제2209836호)
	<u>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불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최근 2025년도 대형산불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산불의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이러한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과 진화에 소요된 비용⁷⁵⁾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⁷⁶⁾

이에 개정안은 원인제공자에게 산불 진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산불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과 원인제공자의 산불에 대한 책임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75) 산불 진화비용은 다음과 같음

- * (산불진화 인력)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 수당, 출장비 등
- * (산불진화 장비) 헬기·차량 등 운용을 위한 유류비 등

76) 참고로 산불피해액(입목피해·진화비용) 구상권 청구 사례가 존재함.

- ☐ 산불발생 현황

 - 산불발생 : '15.2.8. ~ '15.2.11
 - 피해면적 : 52ha(국유림 25ha, 사유림 27ha)

☐ 산림보호법 위반 사건처리

 -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산불가해자에 대하여 사건처리
 - 산불가해자(피고인)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처분('15.10.21.)
 - * 벌금 : 5,000천원

☐ 손해배상 청구의 소

 - 피해금액에 대하여 산불가해자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및 부동산 가압류 신청('17.12.7.)
 - 손해배상 청구금액(산불 피해액) 내역 : 274,993천원
 - * 입목피해 : 102,633천원
 - * 진화비용 : 172,360천원(인건비 25,291천원, 헬기운용 147,069천원)
 - ⇒ 192,493천원 지급의무 확정(274,993천원 × 70% 경감)

※ 자료: 산림청

의의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존의 법률 체계 하에서도 산불의 진화비용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⁷⁷⁾

개정안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행예정법률의 체계 내에서 산불의 복구비용과 진화비용의 청구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민법」 및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청구가 있을 시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⁷⁸⁾

7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78)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개정안은 실화의 경우에도 산불 복구비용과 진화비용 모두를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인행위자의 과실과 책임의 균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산림청은 시행예정법률의 별칙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 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예정법률에 따라 재난의 대응(산불 진화)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입법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시행예정법률은 2026년 2월 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공포 후 시행 전 법률(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임을 고려할 때, 개정안들의 시행일(부칙)을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통일할 필요가 있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423

참 고 자 료

참고 1 산불취약지도 개요

□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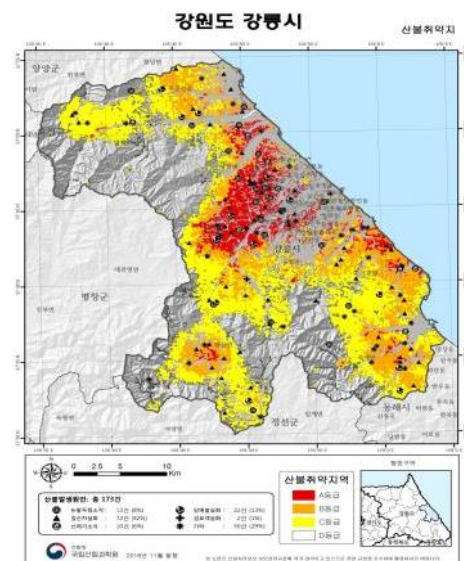
- 최근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에서 인명 및 시설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산불에 취약한 지역의 체계적 선정 및 관리 필요
- 산불 발생, 확산, 피해 위험을 고려한 전국 시도·시군구별 산불 취약지를 선정하여 산불방지 정책 우선순위의 판단 근거로 활용

□ 작성 방법

- 산불발생의 위험과 산불발생 시 예측되는 피해 위험을 고려하여 전국 산림에 산불 취약지수의 값이 표출되도록 점수화
 - 1991년부터 2017년까지 27년간 발생한 11,643건의 산불데이터와 산불지도 작성 알고리즘을 활용, 지리정보시스템(GIS)를 이용하여 분석
 - 산불발생밀도, 침엽수림과의 거리, 인구밀도, 건물밀도, 재해약자시설의 분포, 국가보호시설의 분포를 활용하여 산불취약 위험지수를 산출
- 산불취약위험지수에 따라 위험등급을 A, B, C, D 4단계로 구분
 - A등급(상위 0-10%), B등급(상위 10-30%), C등급(상위 30-60%), D등급(상위 60-100%)으로 분류
 - A등급에 가까울수록 위험도가 높아 해당지역에 산불로 인한 재산,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산불취약지 선정 알고리즘〉



〈강릉시 산불취약지도〉

참고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통제구간 지정 현황

기관명	입산통제구역(ha)			등산로통제구간(km)		
	전체산림	통제구역	비율	전체등산로	통제구간	비율
계	6,298,134	1,820,208	28.9%	31,208	7,622	24.4%
지자체 소계	5,722,099	1,245,995	21.8%	24,756	5,499	22.2%
서울특별시	9,362	-	0.0%	753	-	0.0%
부산광역시	35,047	10,010	28.6%	771	121	15.8%
대구광역시	94,516	14,253	15.1%	655	25	3.7%
인천광역시	17,712	2,521	14.2%	114	84	74.0%
광주광역시	17,153	-	0.0%	281	-	0.0%
대전광역시	22,565	3,096	13.7%	450	7	1.6%
울산광역시	29,675	16,209	54.6%	484	10	2.0%
세종특별자치시	23,744	4,193	17.7%	113	31	27.1%
경기도	415,462	-	0.0%	3,096	-	0.0%
강원도	965,598	217,335	22.5%	2,400	1,197	49.9%
충청북도	488,337	128,656	26.3%	1,464	563	38.5%
충청남도	407,636	144,424	35.4%	1,710	670	39.2%
전라북도	440,746	85,391	19.4%	1,799	457	25.4%
전라남도	689,857	141,675	20.5%	3,275	700	21.4%
경상북도	1,287,495	272,623	21.2%	3,164	724	22.9%
경상남도	689,860	188,974	27.4%	4,125	909	22.0%
제주특별자치도	87,334	16,634	19.0%	101	1	1.0%
산림청 소계	1,506,903	574,213	38.1%	4,343	1,548	35.6%
북부지방산림청	447,170	234,820	52.5%	776	277	35.6%
동부지방산림청	388,837	181,874	46.8%	994	473	47.6%
남부지방산림청	296,851	85,372	28.8%	269	194	72.4%
중부지방산림청	133,009	37,811	28.4%	195	28	14.6%
서부지방산림청	234,309	28,078	12.0%	2,109	575	27.3%
국립산림과학원	6,108	5,641	92.4%	-	-	0.0%
국립수목원	619	617	99.7%	-	-	0.0%
국립공원공단				2,109	575	27.3%

참고 3 국립공원 현황

(2024년 기준, 단위: km²)

공원별	총면적	육지면적	해상면적
총계	6,888.394	4,106.019	2,782.375
지리산	485.647	485.647	-
한려해상	537.479	122.729	414.750
경주	137.418	137.418	-
계룡산	64.176	64.176	-
설악산	400.027	400.027	-
한라산	153.444	153.444	-
속리산	278.921	278.921	-
내장산	80.138	80.138	-
가야산	76.792	76.792	-
덕유산	228.919	228.919	-
오대산	327.904	327.904	-
주왕산	106.114	106.114	-
태안해안	388.604	23.816	364.788
다도해해상	2,276.209	291.022	1,985.187
북한산	77.334	77.334	-
치악산	176.567	176.567	-
월악산	288.140	288.140	-
소백산	321.264	321.264	-
변산반도	154.957	137.307	17.650
월출산	56.526	56.526	-
무등산	75.721	75.721	-
태백산	70.036	70.036	-
팔공산	126.058	126.058	-

※ 산악형 공원은 339천ha

참고 4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구분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구성	공무직근로자 (연중)	기간제근로자 (연 180일)
인원	총 435명 국가 435명	총 9,604명 국가 1,405명 지자체 8,199명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근로기준법, 2025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임금	3,092천 원/월 (기본급 2,801천 원/월, 복지·명절·급식비)	'25년 기준 일 80,240원
산림재난 관련 수당	초과근로(연장·야간·휴일)수당, 출장비,	-
역할	험준지, 야간산불 등 인명·재산위험지 우선 선단·측면산불 투입	평소 산림에서 산불 초동대응 일반 산불진화 잔불진화·뒷불감시
사진		

※ 주: 「산림보호법」 상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산불예방진화대로 규정되어 있음

참고 5

산불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기관 역할

주요 관계기관	역할
산 립 청 · 지 자 체 지 방 청 등	· 산불진화 총괄·지휘(시장·군수·구청장 등) 및 지원 · 산불진화 상황보고 및 전파 및 산불재난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언론브리핑 및 정부합동 담화문 발표(중대본과 공동) · 위기상황 대국민 전파 재난방송의 지원요청, 민방위 경보 발령 및 주민대피 · 산불 위험지수 발표(SMS 등) 및 위기상황 대국민 전파 요청(CBS, DITS) · 산불 규모, 확산 수준에 따라 산불대응단계 발령(공동보좌관 지정)
행 정 안 전 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국민행동요령 전파 및 중앙본부장 등의 대국민 브리핑 실시 · 관계부처 추진 사항 점검, 민방위 경보 발령 및 해당 지자체 대응 지원 · 긴급지휘 통신망 운영지원 및 통신두절 지역 소동지원
국 방 부	· 산불진화 자원 지원(병력, 군 헬기, 군비행장 이용, 산림청 헬기 급유 등) · 군사시설 지역 내 산불예방 조치 및 진화자원 지원·투입 · 군부대 탄약고, 시설물 피해방지 대책강구(방화선 구축 등) · 군부대 사격훈련 자제(필요시)
농 립 축 산 식 품 부 (농 촌 진 흥 청)	· 산불 피해지 논밭두렁 불법소각 방지 활동 강화 · 산불재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원상황실 설치·운영
경 찰 청	· 경찰헬기의 산불진화 지원 및 대민공중 방송 실시 · 인명구조·실종자 수색지원 및 치안유지 · 산불발생지역 주민대피·교통통제 및 산불원인감식 합동조사반 운영
소 방 청	· 소방헬기, 소방차 및 소방인력 지원(주택·민가 방어)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예방·대응 활동 실시
기 상 청	· 산불진로 모니터링 및 기상정보 전파 · 유관기관과 재난관련 정보 공유체계유지
국 가 유 산 청	· 이동 가능한 국가유산 외곽지역으로 이동 조치 · 국가유산보호구역 산불진화 지원
환 경 부 (국 립 공 원 공 단)	· 국립공원 및 인근지역의 헬기 등 산불진화 자원 투입 및 지원 · 국립공원 탐방객 단계별 통제조치 시행 및 피해예상지역 관리
방 송 통 신 위 원 회	· 산불위기정보 발령에 따른 주민행동요령 전파 · kbs 등 방송사에 산불 재난방송 실시 요청 및 시행
교 육 부	· 이재민 학교시설 수용협조 및 학교시설 점검 · 학교 휴업 등 등·하교 시간 조정 실시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 통신시설 복구 · 중앙사고수습본부-과기정통부-방통위-방송사간 협조체계 구축
문 화 체 육 관 광 부	· 현장홍보활동·언론분석지원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 지원
산 업 통 산 자 원 부	· 송전시설 전류차단 및 우회선로 확보 · 송전선 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 지원 및 실시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협력관 송전선 관리 등 임무 수행
보 건 복 지 부	· 산불피해지역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 소관시설 재해약자 안전지역 이송조치 · (필요시) 사망자에 대한 장례절차 준비 등
국 토 교 통 부 (한 국 도 로 공 사)	· 긴급복구물자 운송지원 등 특별수송대책 시행 · 교통시설물 사고 발생 대비 협력 및 비상대책반 운영

참고 6 산불예방 숲가꾸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산불재난 대응을 위한 생활밀착형 숲가꾸기 추진
- 사업기간 : '21년~계속
- 실행주체·지원조건 : 국가직접 100%, 지자체 보조 50%

□ 투자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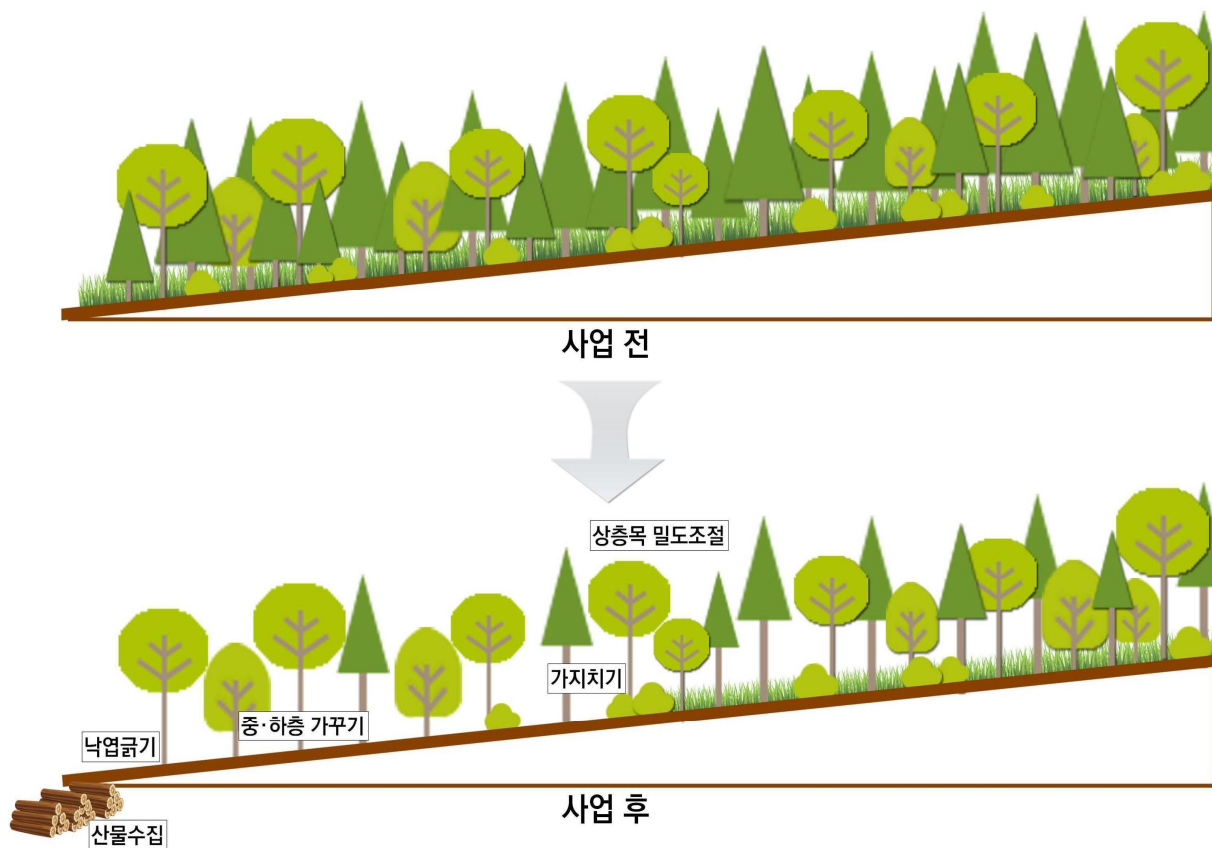
- 주택·도로 등 생활권역의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등 침엽수림을 강도 높은 솜아베기, 가지치기, 산물수집 및 하층식생 관리 등 산림 내 연료물질 제거로 산불에 강한 산림으로 육성
- * 숲가꾸기를 실행한 숲은 미실행 숲보다 산불확산 속도는 41% 감소하고, 토양수분 함량은 79% 상승('21, 국립산림과학원)

□ 사업대상

- 사업대상지 : 200천ha (㉠ 49천ha + ㉡ 151천ha)
 - ㉠. 산불취약 A등급 지역 중 중점 관리 대상지 49천ha
 - * 중점관리대상지(생활권가시지역): 주택 및 도로 등 생활권 주변 100m이내
 - ㉡. 산불취약지역 A·B등급지역 중 도로변 양안 50m이내 151천ha
- 기 추진('21~'22년) 17천ha를 제외한 183천ha를 5년간('23~'27년) 추진
- * '28년부터는 20천ha/년, 10년주기로 체계적 사업추진
- ('23) 17천ha → ('24) 26.8천ha → ('25) 21.3천 → ('26~'27) 117.9천ha

□ 사업방법

- **핵심**(도로변, 농경지 등 산림 **연접부 100m** 내외) 및 **일반**(기타지역)구역으로 구분 작업
 - * 핵심구역: 산불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작업(숙아베기, 가지치기, 산물수집 등) 추진
 - 일반구역: 기존에 시행하던 숲가꾸기 방법으로 작업추진(당초 산림기능 고려)
 - * 핵심구역 내 숙아베기로 공한지가 발생한 경우 활엽수의 자연 발생이 어려운 소나무류 단순림은 활엽수류 인공 조림 가능(기존에 활엽수 중하층목이 있는 경우 제외)
- **(숙아베기)** 산불 확산 방지 등 재해에 강한 숲으로 구조개선을 위해 상층 숙아베기 및 중·하층목 관리(활엽수류 존치)
 - 상층 : 소나무류 밀도조절을 위한 숙아베기, 내화성 수종 존치
 - 중층 : 소나무류 제거, 활엽수 최대한 존치
- **(가지치기)** 핵심구역 내 소나무류는 6m 범위 내에서 전량 실행
- **(산물수집)** 수집산물 전량 임의 반출, 미이용 산물은 파쇄 처리



참고 7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개요

구 분	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목적	산불예방 및 봄·가을 산불조심기간 시 현장 투입·산불진화, 잔불 정리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및 피해예방 조치, 산사태 발생지 현지 확인, 응급복구 지원
시작연도	'03~ 계속	'13~ 계속
예산('25)	77,836백만원	5,727백만원
일일 단가('25)	80,240원	80,240원
보조율	40%	40%
인원('24)	총 9,604명 국가 1,405명 지자체 8,199명	총 760명 국가 108명 지자체 652명
사업기간	180일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150일 (여름철재해대책기간 5월~10월)
전달체계	· 산림청 → 산림청 직할기관, 자치단체	· 산림청 → 자치단체
전문성	산불진화장비, 안전교육 등 전문기술 교육(2주) 수료자	산사태 예방대응 요령, 응급조치 요령 등 교육 수료자
근무현장	전국 주요 산림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

참고 8

산불·산사태 대응인력 현황 및 임금·수당 지급 체계

구분	산불진화단, 산사태대응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 예방단
구성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연 180일)	기간제근로자 (연 150일)
인원	-	총 435명 국가 435명	총 9,604명 국가 1,405명 지자체 8,199명	총 760명 국가 108명 지자체 652명
적용법령	국가공무원법, 청원산림직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근로기준법, 2025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근로기준법, 2025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임금	직급·호봉에 따라 지급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임업8급 공무원에 준용)	3,092천원/월 (기본급 2,801천원/월, 복지·명절·급식비)	'25년 기준 일 80,240원	'25년 기준 일 80,240원
산림재난 관련 수당	특수업무수당, 위험수당(일부), 출장비, 초과근무수당	시간외근로(연장· 야간·휴일) 수당, 출장비, 위험수당	시간외근로(연장· 야간·휴일) 수당, 출장비 (예산범위 내)	시간외근로(연장· 야간·휴일) 수당, 출장비 (예산범위 내)

참고 9 산불경보의 발령기준

구 분	판 단 기 준	주요활동	비상단계
평 시	○ 산불위험지수 낮음 단계 미만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예방 및 위험 저감활동	예방단계
관 심 (Blue)	○ 산불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불경보 「주의」 발령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징후 감시활동	대비단계
주 의 (Yellow)	○ 산불위험지수가 51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조체제 가동	대응단계 (초기대응)
경 계 (Orange)	○ 산불위험지수가 6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발생한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응태세 강화	대응단계 (확산대응)
심 각 (Red)	○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택·국가유산 등 주요시설 20동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총력대응	대응단계 (확산대응)

※ 위 판단기준은 재난에 대한 경보 발령을 위한 기준 제시이며, 실제 경보 발령은 상황의 전개속도,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상황판단회의에서 결정함

※ 위기경보는 상황에 따라 순차에 관계없이, 전국적 또는 지역적으로 발령 가능함

참고 10 내구연한이 있는 중요부품 목록

기종	품목 및 수량	중요부품 목록
S-64	44종, 129개	엔진, 기어박스, 유압서보, 회전날개, 회전축, 연료조절장치 등
KA-32	29종, 60개	엔진, 보조엔진, 기어박스, 회전축, 회전날개, 유압서보, 유압펌프, 하부 슬립링, 소화기, 주 착륙장치, 전방 착륙장치, 연료탱크, 냉각 팬, 유압호스 등
KUH	30종, 211개	엔진, 보조엔진, 기어박스, 회전날개, 회전축, 유압서보, 유압펌프 등
AS350	21종, 49개	엔진, 기어박스, 회전날개, 회전축, 유압서보, 시동발전기 등
Bell206	41종, 48개	엔진, 회전날개, 기어박스, 회전축, 유압서보, 연료 펌프, 연료조절장치, 연료 노즐 등

참고 11 '25년 산불예방·진화 유공 포상 및 포상금 개요

□ 포상 개요

- (표창) 산불예방·진화 유공 110점(대통령 8, 국무총리 13, 장관 13, 청장 76)
 - * 정부포상 21점(대통령 8, 국무총리 13)은 행안부 협의 후 규모 확정
- (상장) 8점, 공모전 등 우수단체·개인에게 직접수여 또는 상장지원
 - 산불방지분야 공모(7점), 산불강사 경진대회(1점)
- (우수기관) 봄철 산불방지 우수기관, 산불진화훈련 우수기관 선정으로 선의의 경쟁 도모

□ 포상별 포상금 계획

포 상 명	포상내역		집행 시기	비고
	포상 수량(상장 포함)	상금(천원)		
계	118	152,000	-	-
■ 봄철 산불예방·대응 우수기관	-	87,600	10월	
■ 산불방지 유공(정기)	표창 110 대통령 8, 국무총리 13, 농림부장관 13, 산림청장 76	20,200	10월	청장표창에 한하여 상금지급
■ 산불방지분야 공모	상장 7	9,400	10월	
■ 산불강사 경진대회	상장 1	-	9월	
■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	-	21,000	-	-
■ 산불진화훈련 우수기관 포상금	-	13,800	12월	

※ 예산과목 : 2332-300-310-03 (산불방지대책 포상금)